

第300回國會 政治改革特別委員會會議錄 第 5 號
(臨時會·閉會中)

國會事務處

日 時 2011年5月12日(木)

場 所 特別委員會會議室(議員會館 101號)

議事日程

- 1.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 대한 보고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2. 재외국민선거제도에 관한 공청회

審査된案件

- 1.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 대한 보고 1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2. 재외국민선거제도에 관한 공청회 28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이경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임시국회 폐회중 제5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보고사항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시던 전병헌 위원께서 사임하시고 박선숙 위원께서 보임해 오셨습니다. 박선숙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숙 위원 민주당 박선숙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동료·선배 위원님들과 함께 정당법·선거법·정치자금법의 좀더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전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부터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 대하여 중앙선거관위로부터 보고를 받고, 오후 2시에는 재외국민선거제도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한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1.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 대한 보고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10시08분)

○위원장 이경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 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지난 4월 27일 재보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관리를 총괄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서른여덟 곳에서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개선할 점들이 노출된 것으로 압니다. 우리 위원회가 정치관계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법제도상의 문제점을 과감히 개선하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종우 사무총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존경하는 이경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정치관계법 심의를 위해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우리 위원회가 제출한 개정의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마련함에 있어 선거의 양대 이념인 자유와 공정의 조화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정치·사회적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새롭게 제기되는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주의 해소와 정당의 공직후보자 추천 과정의 민주성 제고를 위하여 정당 의석의 지역 편중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과 국민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는 제도를 강구하였습니다.

재외선거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선거 부정을 실효적으로 예방·단속하여야 한다는 점과 재외 국민의 참여 편의를 제고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행정적 제재방안과 참정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선거운동의 자유 보장을 위한 규제 완화와 유권자의 실질적인 선거 참여 확대가 요청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단체 및 언론기관의 대담·토론회를 활성화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기간 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인터넷 언론의 불공정 보도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에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제18대 대통령선거가 연이어 실시됩니다. 당장 올 10월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 운영을 시작으로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등록 등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위원회는 내년도 양대 선거에서 처음 실시되는 재외선거를 대비하여 4월 초 재외선거관 파견을 완료하였고, 7월 중에는 모의 재선거를 실시하는 한편,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재외선거제도에 대한 안내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내년도 양대 선거를 대비한 재외선거 사무 준비가 이미 시작된 점을 감안하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의가 조속히 이루어져 1년 앞으로 다가온 양대 선거가 원만히 관리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위원회는 그동안 국민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항상 공정하고 엄정하게 선거를 관리해 왔습니다. 다가오는 양대 선거에 있어서도 민주 시민의식의 성숙에 따른 국민적 요구와 변화된 선거환경을 반영하여 정치관계법이 개정되면 그 입법취지를 살려 엄정 중립의 자세를 견지하는 가운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에 힘쓸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개정의견에 대한 상세한 보고는 선거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재 수고하셨습니다.

선거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실장 김용희 선거실장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지난 4월 8일에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개정의견 작성 방향을 보고드리고 다음으로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순으로 구체적인 개정의견의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의견 작성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면입니다.

먼저 공직선거법입니다.

지역주의 완화를 위하여 지역구에서 낙선하더라도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는 지역구결합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정당 당내경선 민주성 확보를 위해 국민경선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국외선거법에 대한 여권 발급 및 국내 입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외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의 순회접수, 추가 투표소 설치, 제한적 우편투표를 허용하고, 재외선거 절차사무와 관련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고, 돈선거 근절을 위해 금품 관련 선거범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이 조화될 수 있도록 일부 제도를 정비하였으며, 선거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인

터넷 선거운동의 기간 제한을 폐지하고, 투표 편의 제고를 위해 통합선거인명부 작성·활용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선거 때마다 제기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고, 그 밖에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입니다.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은 정당활동 자유의 보장과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원 자격을 완화하고 정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익광고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고액 당비납부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고 회계감사 및 공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의 구체적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국회의원 선출 방법 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당은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서 시도별로 지역구 후보자 중에서 2명 이상을 비례대표명부의 같은 순위에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구결합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역구결합 비례대표 후보자 중에서 지역구에서 낙선하더라도 각 순위마다 상대적으로 득표율이 높은 후보자 1명을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이 제도가 지역주의 완화에만 활용될 수 있도록 시도별 지역구 당선자 수가 해당 시도 지역구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정당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하였고 비례대표라 하더라도 일정 정도 지역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득표율이 10% 이상인 경우에만 당선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구결합 비례대표로 당선된 사람이 궐원되는 때에는 그 의석승계도 다음 순위의 지역구결합 비례대표 후보자가 우선 승계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지역구결합 비례대표제는 별도의 비례대표 의석을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각 정당에 배분되는 비례대표 의석 중 일부를 지역구결합 비례대표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당별로 배분되는 의석수는 현행과 같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약에 이 제도가 도입이 된다고 한다면 각 정당에서 비례대표후보자명부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예시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유인물을 낱장으로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게 있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에 정당에서 비례대표후보자명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 1번 순위에는 지금 현행 제도와 같이 여성 후보를 배정합니다. 홀수에는 여성 후보를 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 제도에. 그 현행 제도를 그대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추천순위 2번에는 이와 같이 지역구에 입후보한 후보자를 이런 식으로 중복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번에 김 아무개, 2번에 이 아무개, 2번에 박 아무개, 2번에 최 아무개, 3번에 이 아무개 하는데 이 동일 순위에는 당해 시도의, 한 시도의 지역구에 출마하는 후보자들만 등록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3번에 가서 다시 여성 후보를 추천하고 4번에 가서 다시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를 중복해서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배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번에 여성 후보를 추천하고, 6번에 가서는 지역구결합을 원치 않는다 하면 정당에서 1명만 마찬가지로 현행 제도와 같이 추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명부는 작성을 해서 제출하게 되고, 당선자는 지금 현행과 똑같이 각 정당에서 정당 득표를 얻은 득표수 가지고 정당별로 의석수를 할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석수에 따라 가지고 추천된 순위에 따라서 당선자 수를 내게 됩니다.

다음은 국민경선 도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먼저 국민경선의 경선일입니다.

지방의원을 제외한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서 국고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이 당내경선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선거권이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같은 날 동시에 경선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경선일은 대통령선거는 본선거의 선거일 전 120일 이후 첫 번째 토요일에, 그 외의 선거는 본선거의 선거일 전 40일 이후 첫 번째 토요일로 하였습니다.

한편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모두 참여한 경우에만 국민경선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대통령선거에서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모두 참여한 경우에만 국민경선을 실시하도록 하는 이유는 역선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경선에는 본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3쪽입니다. 경선 후보자 등록신청 접수는 정당이 자율적으로 하되 경선일 전 5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선운동은 현재 비당원 참여 당내경선의 경우와 동일하게 경선 홍보물은 매 세대에 발송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경선의 투·개표에 관한 내용입니다.

14쪽입니다.

경선투표소는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하고, 경선선거인은 주소 또는 거소에 불구하고 자신이 투표하기 편한 투표소에 가서 자신이 참여하고자 하는 하나의 정당을 선택하여 경선투표용지를 교부받아 투표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경선투표의 경우에는 전국을 통합명부로 묶어서 어느 읍·면·동사무소를 가든지 투표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있어 국민경선 결과의 반영 정도는 정당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국민경선에 소요되는 경비는 투·개표 참관인 수당을 제외하고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개정의 전입니다.

16쪽입니다.

먼저 국외선거사범의 재판 관할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의 관할을 특정할 수 없는 국외선거사범의 재판 관할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외선거사범에 대한 행정적 제재 방안입니다.

먼저 여권 발급의 제한입니다.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국외선거사범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거나 소재가 불명하여 조사를 종결할 수 없는 사람과 기소 중지된 사람에 대해서는 여권 발급을 거부하거나 반납을 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여권 발급 거부·제한 기간은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5년 이내로 하되 조사나 수사에 응하는 등 그 요청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거부·제한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의 입국 제한에 관한 내용입니다.

18쪽입니다.

국내법으로 처벌이 불가능한 시민권자 등 외국인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입국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입국 제한 기간은 해당 선거 당선인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하되 수사에 응하기 위하여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국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과 절차사무 개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19쪽입니다.

먼저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현재는 공관을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순회 영사를 통해 공관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순회접수를 도입하였습니다.

다음은 등록신청·기간 연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20쪽입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및 국외부재자 신고 기간을 현행 선거일 전 150일부터에서 선거일 전 1년부터 연장하였습니다. 다만 내년 국회의원선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내년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후 30일부터로 하였습니다.

제한적 우편투표 허용입니다.

파병군인과 대만 및 공관이 설치되지 않은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에 한하여 제한적 우편투표를 허용하였으며 그 인원은 6700여 명 정도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실적으로 공관에 설치된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기 어려운 재외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관 외의 장소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예상 투표자 수가 2만 명을 넘는 공관의 경우에는 매 2만 명까지마다 1개소의 투표소를 공관

외의 장소에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그 수는 21개 공관에 37개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용지도 국내에서 자서식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송부하는 것을 재외투표소에서 직접 발급하여 국내와 같은 기표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2면입니다, 재외투표소에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여권 외에 대한민국 또는 거류국의 국가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외위원회 설치·운영 등과 관련한 개정의견입니다.

23쪽입니다.

먼저 공관마다 재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영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공관, 영사관할구역이 없는 공관, 영사관할구역 안에 공관사무소가 설치되지 않은 공관에는 재외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도록 조정하였고, 두 번째 재외위원회 설치·운영 기간의 특례를 두어 재외위원회 설치·운영 기간이 겹치거나 인접한 경우에는 별도의 재외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외투표관리관에 관한 내용입니다.

24쪽입니다.

재외투표관리관이 재외위원회 위원을 겸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였고, 공관장 외에 총영사를 두고 있는 14개 공관은 공관장이 아닌 총영사를 재외투표관리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5면입니다,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재외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거나 재외선거사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외선거인명부 작성 등에 관한 개정의견입니다.

26쪽입니다.

먼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등과 관련한 서류의 송부를 선거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산 자료로 보내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정확한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을 위하여 국가의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27면입니다.

재외선거인이 보다 편리하게 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이용한 재외선거인명부 열람 방법을 확대하고, 재외선거인명부의 불법적 활용을 차단하기 위해 재외선거인명부와 국외부재자신고

인명부의 사본은 교부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공관에서 재외선거인명부 등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되 안정적 선거관리를 위해 명부가 확정된 후에는 복수국적을 이유로 선거권 유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28면입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첨부서류를 개선하여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시 국적 확인이 가능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복수국적 여부를 보다 철저히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29면입니다.

중복으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이나 국외부재자 신고를 한 경우 업무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재외선거인명부 등은 선거일 전 60일 현재의 주민등록 또는 국내 거소를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명확하게 하였으며 그에 따른 국내 선거인명부 작성 방법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외선거운동과 투·개표 절차의 보완에 관한 내용입니다.

30쪽입니다.

먼저 위성방송사업자 이외에 국외 송출이 가능한 국내에 있는 방송시설은 모두 후보자의 방송연설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을 현행 선거일 전 15일부터 2일간에서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으로 앞당겨 재외 선거인이 정당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후보자의 선거운동은 현재와 같이 선거일 전 13일부터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서식 투표방법의 명확화입니다.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성명이나 기호를 모두 한글이나 아라비아 숫자 아닌 다른 언어로 적은 경우에는 그 투표는 무효로 하도록 하였는데 만약 투표소에서 발급장치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자서식 투표는 파병군인 등 우편투표가 허용되는 경우에만 적용됨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재외투표 참관방법 등의 개선입니다.

재외투표소에서도 참관인이 교대 참관하도록 하고 투표참관인 신고가 없거나 하나의 정당·후보자만이 신고를 한 경우 재외위원회가 위촉하는 참관인을 4명에서 2명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외투표의 출구조사 금지입니다.

32쪽입니다.

재외투표 결과가 국내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재외투표소에서 출구조사를 금지하고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로 재외투표를 송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지에서 개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선거권 조정입니다.

33쪽입니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거소신고인 명부에 올라 있는 재외국민에 한하여 선거권을 부여하고,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이라도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는 투표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돈 선거 근절을 위한 금품 관련 선거범죄에 대한 제재 강화입니다.

34쪽입니다.

먼저 매수 목적 금품운반죄의 적용기간을 선거기간에서 상시로 하고 금품을 운반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소지하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하였고, 금품수수 행위의 50배 과태료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금전과 물품 등의 구분 없이 기부행위 제한·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35면입니다.

또한 매수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6월이 아닌 선거일 후 2년으로 연장하여 그 처벌가능성을 높였으며,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금품 등을 제공한 자가 자수한 때에도 그 형을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조직적 금품 제공 범죄의 효과적인 적발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선거운동의 자유 보장과 공정성 확보의 조화입니다.

36쪽입니다.

먼저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규제완화입니다.

첫 번째로, 대담·토론회와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단체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가능한 것을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개시일부터 가능하도록 하고, 선거운동을 할 것을 표방한 단체가 아니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부의 정책이나 정당의 정강·정책에 대해 전문

가를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언론기관은 언제든지 후보자나 입후보 예정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기간제한 폐지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전송에 의한 선거운동은 기간제한을 폐지하였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 선거운동 허용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매수죄로 처벌하고, 그 대가를 받은 자는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정규 교육경력에 대한 제한적 게재 허용과 선거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38쪽입니다.

현재는 그 게재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비정규 교육경력을 그 표시를 한 경우에는 선거벽보 등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먼저 인터넷 언론의 불공정 보도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불공정 선거 보도를 한 인터넷 언론사에 정정보도문 게재 등의 조치를 하는 외에 해당 기사를 게재한 포털 등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불공정 보도에 관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기사에 이의신청이 있음을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선거 관련 여론조사의 신뢰성·객관성 제고입니다.

여론조사의 신뢰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보도 또는 공표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때에는 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밝히도록 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공표하는 때에는 신뢰성·객관성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함께 공개하도록 하고, 선거범죄의 조사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집된 설문지를 포함한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왜곡 보도 또는 공표하거나 언론기관이 객관적 근거 없이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때에는 왜곡보도

금지규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였습니다.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 부재자투표소 설치입니다.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도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통합선거인명부를 활용하여 선거인은 누구나 별도의 부재자 신고 없이 부재자투표소에서 미리 투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 불편 해소와 선거 참여 확대를 위한 편의 증진에 관한 개정 의견입니다.

41쪽입니다.

선거에서 소음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이 정차된 경우에는 녹음기·녹화기를 이용하여 음악방송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자동동보통신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에는 1회에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도록 하며, 사전에 그 전화번호를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선거인명부 활용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42쪽입니다.

투표소가 설치된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선거인이 투표할 수 있도록 전산통합선거인명부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제도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재·보궐선거에 우선 적용하여 검증을 거친 후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투표용지의 투표소 현장 발급입니다.

투표용지를 프린터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투표소에서 발급·교부하도록 함으로써 후보자 사퇴 등에 따른 무효표 발생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고, 부재자신고를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인명부 확정 후에는 구·시·군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선거인명부 등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성형 선거공보 허용입니다.

44쪽입니다.

현재는 점자형 선거공보만을 허용하고 있는 것을 음성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인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였습니다.

불합리한 선거제도 개선·보완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먼저 종합편성방송채널 사용사업자가 관리·운

영하는 방송시설도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 방송시설에 포함하였으며, 방송토론회 위원회 주관 토론회 개최방법을 개선하여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 상위 1위부터 5위까지의 정당·후보자와 그 외의 정당·후보자로 나누어 각각 개최하도록 하여 토론회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책토론회의 경우에도 주제에 관한 공정한 토론을 위하여 발언 횟수와 시간을 보장하며, 정책에 대한 찬성 및 반대 주장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46쪽입니다.

먼저 신분보장 대상 선거사무관계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였고…… 47면입니다. 후보자의 전과 기록 조회기관 제한을 폐지하였으며, 각종 서명·날인 등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횟수 제한을 폐지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언론기관 대담·토론회 개최장소를 옥내로 제한하고, 전화를 이용한 음성 선거운동 정보 전송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타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금지규정의 적용범위를 운용기준에 맞게 정리하고, 무소속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공휴일에도 선거권자 추천장의 검인·교부 신청을 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또한 교육감선거 관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도 선거범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고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하도록 하여 중립성을 강화하였으며, 명함 배부·어깨띠 착용·거리 인사 등의 선거운동에 있어서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선거운동 범위를 일원화하여 정리하였고, 동시선거에 있어서 투표용지 인쇄 주체를 개선하였습니다.

이상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0쪽입니다.

먼저 정당 활동 보장의 실효성 확보입니다.

첫 번째, 국회부의장의 보좌직원과 국회 교섭

단체 행정보조요원은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고, 다음으로 정당의 명칭에는 특정인의 성이나 이름을 포함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51쪽입니다. 공무원 등이 정당에 가입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정당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한 공익광고 근거를 마련 하였습니다.

지상과 방송사는 임기 만료에 의한 공직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한국방송광고 공사가 제공한 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한 공익광고를 5회 방송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당사무의 합리적 개선입니다.

52쪽입니다.

중앙당의 당원명부를 전산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과태료 규정을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의 내용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치자금법의 투명성 확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월 1000만 원, 연간 1억 원을 초과하여 납부한 당비는 그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였고, 당대표 경선 후보자도 회계보고 시에 소속 정당의 자체 감사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하였으며, 회계보고의 인터넷 공개 범위를 선거비용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명세서로 확대 하였고, 선거비용 수입·지출 내역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에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후원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기 또는 수시 회계사무 처리상황 확인·점검 근거를 명문화하고,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의 효과적인 적발과 처벌을 위하여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다음은 정책연구소에 경상보조금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중앙당을 통해 경상보조금의 30% 이상을 정책연구소에 지급하는 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책연구소에 직접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자금사무의 합리적 개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연간 모금액을 초과하여 모금한 경

우 그 초과 모금액은 다음 연도의 모금 한도액에 포함하도록 하고 같은 연도에 둘 이상의 전국 단위 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연간 모금 기부 한도액을 평년의 2배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후원금은 입금 의뢰인의 인적사항을 조회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불필요한 후원회의 해산신고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교육선거제도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회계보고서의 첨부서류 제출규정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57면입니다.

한편 당선인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비용 관련 범죄의 확정판결서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도록 하고, 반환·보전 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의 정당에 대한 인계일자를 일치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 1인당 7분으로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 일정을 감안해서 질의시간을 잘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민주당의 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민 위원 노영민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보고된 내용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 다만 제가, 선거구 간의 인구편차에 대한 현재 위원 결정에 따라서 우리가 선거구 간의 그 인구를 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한선, 하한선을 두고 있지요.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체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의 결정은 현재 기초자치단체 위주로 돼 있는 선거구 그 사이에서의 편차만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자치단체가 광역과 기초라는 두 가지, 이중적인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예.

○노영민 위원 따라서 이 인구편차가 광역 내지는 권역별 편차 역시 과도하게 그 형평성이 훼손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광주, 전남·북이라는 호남이 대전, 충남·북이라는 충청권보다 인구가 적습니다. 그런데 호남은 지역구가 31개입니다. 충청권은 지역구가 24개입니다, 인구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보면 울산은 인구가 100만입니다. 광주가 대전보다 적습니다. 대전이 광주보다 많습니다. 대전이 한 150만 되지요. 광주는 100, 저기…… 울산은 한 100만입니다. 울산이 지역구가 6개입니다. 대전이 6개입니다. 광주가 8개입니다. 인구가 더 많은 곳이 6개인데 적은 곳은 8개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1명 평균 지역구의 인구편차가 과도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호남과 충청권을 비교했지만 영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남도 충청권에 비해서 과도하게 의석수가 많습니다. 이것은 권역별, 그 지역구의 과도한 편향 편차는 위헌적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구별 인구편차만이 아니고 큰 틀에서 광역자치단체 내지는 권역별 전체 지역구 의석수가 어느 정도 편차가 합리적 수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는 이러한 것이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헌적 소지가 너무 크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에서 지역주의의 폐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확실한 지역에 근거를 갖는 정당이 그 지역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켜온 거지요. 지역구가 줄어들 것 같으면 어떻게 행정구역을 조정해서라도 살리고, 아직까지 지역구로 분할될 수준이 안 돼 있으면 또 어디 것 붙여 가지고 분할하고…… 인위적인 지역구 조정을 통해서 과도한 지역구가 발생한 겁니다, 영·호남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 피해를 타 지역이 본 겁니다. 이것이 도시, 농촌 간 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울산이 농촌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도시 지역에 농촌 지역보다도 더 과잉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됩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총장님께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현재에서 선거구,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할 때 시·도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기준으로 했지 권역별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공직선거법에서도 선거구를 획정할 때는 인구적 요소하고 비인구적 요소를 갖다가 고려해서 획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에서 그 비례 원칙의 기준은 가장 근

본적이고 기초적인 산정기준이 뭐였냐? 인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구는 평균 인구수의 상·하한 3 대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권역별 인구수와 국회의원 의석수의 비례성 이 부분은 선거구 획정에서 충분히 고려해 볼……

○노영민 위원 당시 현재에 위헌제청을 했을 때는 바로 이런 광역자치단체라든지 권역별 인구에 대한 편차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청구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청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은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그래서 그 부분은 정개특위에서도 어떤 구체적인 반영 방법이나 이 기준 등을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영민 위원 또 하나 그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론조사 결과가 그것이 밴드왜건(bandwagon) 효과가 됐던 언더도그(underdog) 효과가 됐던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 여론조사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신뢰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납득할 수 없는 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전혀 연령대별 인구 편차, 인구 비례할당을 무시한다거나 이것은 여론조사가 아니라…… 사실은 선거운동을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으로밖에 볼 수 없는 여론조사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어느 지역에서 20대 유권자가 한 30%다…… 50대 이하가 한 80%, 50대 이상이 한 20% 인구다 그러면 이 샘플 비례할당을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오히려 60대 이상에 한 80% 샘플 할당하고 50대 이하는 십몇 % 샘플 할당하고 이런 것을 그냥 공개해 버립니다, 일면 톱으로. 그러고서 이 샘플이 어떻게 구성돼 있다라는 것은 아예 공개도 안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아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극단적 왜곡 사례인데, 이것이 실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앞으로는 여론조사

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런 규정
이 법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법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론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는
상당히, 유권자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알권리입니
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선거인의 연령별이
나 성별이나 이런 표본의 크기를 가지고 신뢰성
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
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번에 선거
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하는 데 대한 개정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의 정확
성이라든지 신뢰성을 위해서는 제도개선을 정개
특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
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노영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재 노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김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김정훈입니다.

내년부터 우리 재외국민들 투표권이 보장돼서
투표가 실시되는데요. 여기 보고서 16쪽에 보면
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국외선거사범
에 대한 재판관할을 명확하게 하겠다 이랬는데
이 재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있을, 향후에 교민
사회에서 여야로 갈려 가지고 서로 갈등이 생키
고 그러다 보면 고소고발전이 또 국내처럼 벌어
지지 않겠나 싶은데 그러면 재외교민들끼리 고
소·고발, 선거 관련 고소·고발이 있을 때 그
사건은 어디서 담당을 하며 누가 그걸 조사하고
어떻게 사법처리를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
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그렇습니
다. 지금 현재로…… 위원님께서도 지난 정개특
위에서 이 부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입법화
단계에서도 많은 걱정을, 우려를 하셨습니다. 재
외에서, 해외에서 선거법을 위반했을 때의 제재
는 지금 제도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재외에서 일어난
것이라도 그 사람들은 국내법의 적용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런 위법 사

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관위에서는 사전 예방활
동을 하면서, 선제적으로 예방활동을 해야 될 것
같고……

○김정훈 위원 아니, 그 예방은 하는데 고소·
고발이…… 그러면 어디로 고소·고발을 해야 됩
니까? 선거법을…… 누가 금품 살포를 한다, 그
래서 그걸 고발을 해야 되는데 어디다 고발을 해
야 됩니까? 고발을 한다면 어디에 고발을 해야
돼요, 현지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현지에서
재외공관에다가……

○김정훈 위원 어디다가 고발해요? 그러니까 교
민사회에서 막 이렇게 선거가 격화되다 보니까
우리 국내처럼 금품살포행위가 생겼을 때 ‘아, 저
거 부정선거 행위를 한다. 고발을 해야 되겠다’,
그걸 어디다 고발을 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지금 현
재……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지난 정
개특위에서 원래는 재외선거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재외선거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선거사범에 대한 관리를 총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재외선관위를 뒀습니다. 그래서 그것
을 재외선관위에 고발하면, 신고·제보하면 되겠
습니다.

○김정훈 위원 재외선거위원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예.

○김정훈 위원 그 설치가 보면 다 하는 게 아니
던데, 설치 안 된 데는 어떻게 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161개 공
관에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설치안 하는 데는
공관 사무가 없든지 그다음에 겸임 공관이라든
지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161개 공관에는 재
외선거위원회가 설치……

○김정훈 위원 그러면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사
법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그 부분
은 저희들도 영사제도와 관련해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영사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현재로…… 영사 조사를 하려고 그럴 것
같으면 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러니
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사제도 도입
개정 의견은 안 냈는데 어쨌든 거기에 있는 사람
은 재외국민이라면, 재외국민은 재외선관위에다가
신고를 하면 그 신고한 사람의 정당이라든지, 국
내에 있는 사람은 국내에서 신고·제보를 해 가

지고 하면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정훈 위원** 아직 내가…… 우리 총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부정선거 관련 행위를 했을 때 고소·고발이라든지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좀더 보완하시고, 그리고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재외국민들한테 선거권을 줬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됩니다마는 걱정이 우리 교민사회가 정말로 이 투표권 가지고 사분오열, 갈등이 격화되지 않을까 그게 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 우리 재외교민들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아울러 같이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예.

○**김정훈 위원** 그리고 두 번째 항목에 보면…… 두 번째 항목보다도 내가 먼저 질문해야 될 게 20페이지에 보면 공관이 설치 안 돼 있는 데는 우편투표, 제한적 우편투표를 허용한다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면 공관이 없는 데 거주하는 우리 교민들은 우편으로 투표를 가능하게끔 했다고 이 말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그렇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선원들, 우리 국민이면서 해외에서 조업을 하는, 우리 국가경제를 위해서 조업을 하는 선원들에 대해서 선상 투표권을 주자 했다가 그때 야당 반대로 그게 통과가 되지는 않았습니까마는 원내대표끼리는 그거 다 합의를 한 사항이었습니까만, 그러면 이렇게 공관이 설치 안 돼 있는 데 교민들한테도 제한적인 우편투표를 허용해 주는 마당에 우리 국가경제를 위해서 바다에 나가서 그렇게 고생하는 선원들에 대해서 우편투표라도 허용을 안 해준다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현재에서 불합치 결정이 나 가지고 지난 정개특위에서 합의가 안 된 부분인데요. 그 부분도 이번 정개특위에서 충분히 논의하여야 할 대상의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정훈 위원** 그거 잘 처리가 돼야 되겠고요. 선원들 한 2만 명 정도가 투표권을 가지게 되는데 그거 보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중대 국외선거법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규정이 있어요. 신설을 한다 해 놨는데…… 우리 일반 내국인들, 내국 국민들

이 선거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여권발급을 제한하고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예.

○**김정훈 위원** 그런데 재외국민이 했다 해 가지고 수배를 한다든지 기소중지를 해 놓는다든지 하는 것은 모르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의 평등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 아닌가 하는 소지가 있는데 총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지금 재외선거의, 국외에서 선거법을 위반했을 때 실효적인 단속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을 제한하는 부분은 재외국민이라면 여권이 필수불가결한 소지품인 것 같습니다.

○**김정훈 위원** 내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내국인은 바로 신고·제보에 의해서 조사할 수 있지만 이것은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권법이라든지 출입국관리법에서도 이와 같은 여권의 제한이라든지 발급의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어떤 행정적 제재를 통해서 선거법을 준수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김정훈 위원** 평등성에 위반된다 생각 안 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국가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가지고 적용한다면 그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까지는 보지 아니할 것 같습니다.

○**김정훈 위원**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재** 김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박기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춘 위원** 박기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정치관계법을 새롭게 만들어서 오늘 설명을 하셨는데 고민은 좀 하신 것 같기는 합니다. 저는 완전국민경선제와 관련해서만 한 말씀

을 드리면, 물론 여러 가지 기대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직후보 선출에 있어서 민주화를 달성한다고 하는 생각도 들고요, 새로운 인물의 등장을 용이하게 해서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또 당원은 아니지만 정당을 지지하는 일반 유권자에게 정치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공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게, 가능하게 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요. 또 선거인명부 자체가 기초단체장이 직권 작성함에 따라서 경선에 따른 여러 가지 불법 선거가 가능한데 당원 모집 과정에서 발생했던 그런 금품수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근절시킨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각 정당이 동시에 경선을 실시하는 문제는 우선 군소정당의 존재를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야권연대라든지 야권통합, 여기를 또 무력화시킬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서 좀 신중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유감스러운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분명한 헌법적 독립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외풍에 상당히 약해요. 허약하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당초에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에서 오늘 보고 내용을 보면 상당히 삭제된 부분이 많아요. 특히 청와대에서 문제 지적했던 부분들, 법인 후원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싹 빠졌거든요. 이런 것을 여러 공청회를 통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민해서 만들었는데 청와대에서 한번 입김 쏘었다고 해서 이것 싹 빼 버린다는 말이에요. 이것 철저하게 중립성의 훼손이에요. 독립성의 훼손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정치 발전을 하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분명한 중심을 지키고 독립성에서, 중립성에서 완벽한 보장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어제 신문만 보더라도 일간지에 이런 게 나왔어요. 이재오 특임장관이 말이지요, 지난 4·2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두 차례에 걸쳐서 친이계 모임을 소집했습니다.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 또는 권유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주장이 나왔어요. 소위 말씀드리면 이것이 뭐냐면 특임장관 핵심 측근 의원의 양심 고백이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말이지요…… 총장님 그 내용

보셨어요, 어제 일간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어제……

○박기춘 위원 ‘재보선을 앞두고 여당의 중심축 다시 만들어라’, 그래서 그런 모임을 만들었다고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오 장관이 아니라 MB 계보인데다가, 그렇게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장관이 자기 욕심을 내세워서 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을 두 차례 소집한 것처럼 이렇게 비쳐져서 매우 유감이다 하는 뜻의 말을 했습니다.

특히 말이지요, 명확하게 얘기한 부분이 하나, ‘대통령을 위해서 대통령의 지시로 의원 모임을 했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그……

○박기춘 위원 그러면서 친이계 이 의원이 다시는 이런 짓을 안 하겠다고까지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4·27 보궐선거, 김해 선거에서도 특임장관실에서 불법 선거운동 한 증거가 분명히 수집됐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전혀 어떤 발표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관위가 선거의 과정에서 편파성이다, 외풍에 허약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박기춘 위원 뭐가 동의가 안 돼요? 지난번에 나왔던 게 하나도 없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춘 위원 지금 정무수석이 한마디 하니까 지금 다 뺏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지금 개정의견은……

○박기춘 위원 많은 국민들, 언론들이 긍정적인 성원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지금 여기 없잖아요. 알맹이 빠졌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개정의견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개정의견을 할 때는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국민적 동의가 이루어졌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현실 적합성에 맞춰서

이런 쪽으로 했지만 지난 토론회에서 또 학계에서, 단체에서 일부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반영하지 못했을 뿐이고, 다만 그와 관련해서는 18대에 선관위가 2009년도 개정의견을 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보다 조금 더 발전된 것을 이번에 검토를 하다가 그래서 보류가 된 겁니다.

그리고 ‘함께 내일로’나 ‘김해 수첩’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도 조사 의뢰가 왔고 검찰에도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는 사직당국에 고발이 되면 우리가 조사하던 과정 모든 일체를 사직당국에 이첩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된 것은 사직당국에서 같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춘 위원 선관위도 고발을 한 겁니까, 이첩시킨 겁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선관위에는 경실련에서 조사 의뢰가 왔고요, 민주당에서는 고발을 했습니다, 동일 사안에 대해서.

○박기춘 위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단 조사를 했는데 그 의견을 냈냐는 말이에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저희들은 그것까지 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사직당국에 이첩을 했고요. 김해 수첩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안이 벌어졌을 때 특임장관실과 수첩을 수거한 쪽에다가 다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에 검찰에 고발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한 부분을 포함해서 전부 다 검찰에 이첩해 준 상태입니다.

○박기춘 위원 그래서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위원회의 직원들은 어떤 시대나 상황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기춘 위원 지금 마무리해야 되니까 한 말씀만 드리고 답변 마무리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제가 이 부분에서는 꼭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박기춘 위원 아니, 마저 하고 답변하시라고요. 선거관리위가 철저히 중립을 지켜야 됴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나 정부의 장관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명백하게 선거 개입을 했어요. 어제 증거가 됐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법에 따라서 적법한 조

치를 해야 된다 이것까지 포함해서 답변하세요. 엄중한 처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그다음에 9조나 86조나 60조에 관련되는 상당히 많은 판례와 선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종전 선례에 의할 것 같으면 당원이고 이중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당내 행사에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그 부분을 선거법의 위반으로 보지 아니하였습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저희들은 일차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었고 이 부분은 현재 이첩이 되어 가지고 검찰에 고발이 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여기에서 더 이상 이야기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박기춘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박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한나라당의 박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俊宣 委員 한나라당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출신의 박준선 위원입니다.

오늘 중앙선관위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이 상당히 준비가 많이 됐고 많이 고민한 흔적이 있습니다. 잘 보고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개특위 전체회의 그리고 소위원회에서 또 논의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사무총장님 비롯해서 선관위 관계자들 그다음에 우리 정개특위 위원이 함께 있는데 하여간 우리 선거법 그다음에 정당법, 정치자금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정치의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법적인 틀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사상의 자유가 매우 신장되고, 국민들은 정치적인 의사 표현을 활발히 하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국민들의 그런 민주적인 의사 표현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조성하고 하는 정치적인 자유를 점점 신장시키는 것이 하나의 축, 또 한가지는 그로 인해서 너무 자유를 허용하다 보면 국민, 민주적인 의사 형성이 왜곡될 수 있다는 부작용, 그래서 여러 가지 제재조항을 두는 것, 그래서 그 두 가지 축을 얼마나 잘 조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정치적인 자유민주주의

의 선진국으로 가느냐, 아니면 법적인 틀 때문에 서로 핑계고 설치고 하면서 정체되느냐, 이런 두 가지 축을 우리가 고민을 잘해야 된다 이 점을 사무총장님과 우리, 한번 밝혀 둡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예.

○朴俊宣 委員 재외선거와 관련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예상되는 재외선거인, 그러니까 투표를 하실 분들이 내년부터 한 230만 명 정도 된다는 데 맞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예, 그렇습니다.

○朴俊宣 委員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재외선거를 위해서 선관위 직원들 약 55명을 해외공관에 파견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예, 그렇습니다. 4월 중에 했습니다.

○朴俊宣 委員 그런데 걱정되는 것이 아무리 선거 관리를 위해서 파견했다라도 국내가 아니고 국외고, 그다음에 직접적인 조사권 이런 것을 행사하기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재외에서 불법선거, 미국이나 이런 데서 교민들끼리 밥을 사 준다는가 또는 특정 후보에 대해서 음해한다는가 비판한다는가 그런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에 대해서 가장 우려가 큼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소시효를 5년으로 늘렸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외국에서 선거사범을, 범죄를 저지르고 우리 국내에 귀국을 안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범죄인 인도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범죄인 인도는 서로 간의 규정을, 미국에서도 처벌하는 규정이고 우리나라도 처벌하는 쌍방 규정이 돼야지 범죄인 인도하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예.

○朴俊宣 委員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거법으로 규정했다라도 미국에서 안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형사사법 공조도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지금 영사들이 파견 나가서, 지금 우리 선관위 직원들도 영사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그렇습니다.

○朴俊宣 委員 그러면 영사가 가서 임의적으로

조사를 해서 참고인 조사를 했는데 그게 지난번에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그 당사자가 국내에 들어와서 임의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증거 조사한 서류가 능력을 인정 못 받는다 말이에요. 증거로 채택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예.

○朴俊宣 委員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법적인 보완장치를 해야 된다. 예컨대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영사의 업무에 관한 법률에 보면 영사 앞에서 행해진 신문, 선서 및 영사가 신문 내용을 기재한 조서는 내용을 기재한 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아예 법률적으로 규정을 해 놨단 말이에요. 선관위 직원이 미국이나 일본 영사관에서 영사로서 조사한 내용이 법정에서 증거능력 인정받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화상으로 조사를 한다든가, 요새는 인터넷이나 이런 게 되어 있으니까. 그다음에 형사소송절차에서 해외에서 조사한 경우는 증거능력을 너무 엄격하게 따지지 말고, 이런 등등의 보완장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 검토할 때는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의해서 법원만이 할 수 있는 영사제도를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증거능력에 대한 특별 규정을 두는 걸로 해서 영사 조사를 하자는 쪽으로 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사 조사를 하는 것도 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고, 승인을 받으려니까 실효적인 어떤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국내에서 사법 절차가 증거능력 인정 쪽으로 되다 보니까 그것이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런 입장으로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이번에 개정의 견으로 포함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영사제도가 들어간다면 국외 선거법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는 물론이거니와 예방적 효과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朴俊宣 委員 알겠습니다. 총장님 시간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그래서 영사제도가 어떤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증거능력에 대한 특별 규정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朴俊宣 委員 그래서 총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하여간 오늘부터 정개특위 활동이 본격화되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예.

○**朴俊宣 委員** 선관위에서도 우리 총장님을 비롯해서 재외 파견 직원들까지 해서 거기에서 아직까지 선거가 본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가 벌어진다든가 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상상력을 발휘해서 선거사범의 범죄자 입장에서 또는 그것을 당하는 피해자 입장에서 또는 선량한 재외국민의 입장에서 그것을 고소·고발, 아까 우리 김정훈 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고발장은 어디로 내는지, 해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런 절차와 이런 것을 어떻게 할 때 효율적인, 어차피 외국에서 벌어진 범죄이기 때문에 그 범죄에 대해서 우리 국내처럼 완전하게 모든 인력을 파견하거나 주권의 어떤 상호 충돌 문제도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단속은 못해요. 그렇다면 효율적인 단속, 그다음에 단속했을 때 엄정한 처벌 이런 것들이 주안점이 되어야 되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고.

마지막으로 공관투표를 일부 허용한다고 하는데 공관투표 외에 다른 데, 공관투표 외에 투표소를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되는 지역이 있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국이라든가 캐나다라든가 독일 같은 데는 공관 외에 투표소 설치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예.

○**朴俊宣 委員** 아까 대만 같이 공관이 없는 데는 우편투표제를 설치한다는데 이런 데는 어떻게 할 겁니까? 공관 외에 투표소를 설치하지 못하는 데. 캐나다도 넓어요, 독일도 넓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지금 현실적으로 독일이나 캐나다나 그런 부분에는 공관 이외에는 지금 불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공관이 투표소를, 기표소하고 그것을 늘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이요. 그것은 안 해주니까. 다만 공관투표를 대원칙으로 하고 추가 투표소도 예상 투표 수가 일정 이상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과밀 지역에는 제한적으로 추가 투표소 설치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朴俊宣 委員** 우편투표제를 거기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우편투표를요?

○**朴俊宣 委員** 중국 같은 데도 넓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우편투표도 지금 현재로는 위원님께서도 더 잘 아시겠지만 처음 재외선거가 도입되어 실시하는데 투표 편의보다는 공정성이 더 우선되어야 된다 그래서 공관투표만 허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저희들이 볼 때는 재외선거가 처음 실시되고 그것이 당선과의 관련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 부분을 한번 시행하고 나서 확대하는 방안,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보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위원장 이경재** 박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숙 위원** 자료 12쪽 좀 봐 주세요.

국민경선 관련된 질문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보고된 내용이 애초에 선관위가 검토했던 원안입니까?

예를 들면 두 가지만 여쭙 볼게요.

‘국민경선이 아닌 방법으로 실시하는 경선은 선관위에 위탁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 이게 애초에 검토했던 원안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예, 이 부분은 원안, 실무자들이 검토한 방안 그대로입니다.

○**박선숙 위원** 처음부터 이렇게 검토하셨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예, 그렇습니다.

○**박선숙 위원** 그다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모두 참여하는 경우에만 국민경선을 실시한다’ 이것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그것은 대통령선거에 한해서요.

○**박선숙 위원** 물론이요. 그런데 원안에도 이렇게 검토하셨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예.

○**박선숙 위원** 처음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예.

○**박선숙 위원** 저는 선관위가 너무 편의주의적 발상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국민경선을 검토한 취지는 좀 더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경선이 되도록 하자라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국민경선을 하는 것은 더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정치적,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박선숙 위원** 같은 말씀을 좀 다르게 하신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예.

○**박선숙 위원** 그러니까 국민의 참여 기회를 더 넓히고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자는 뜻인데, 지금 국민경선이 아닌 방법으로 실시하는 경선을 위탁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2005년 개정 선거법에서 당내 경선사무 중에 경선운동·투표·개표에 관한 사무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그런 기존의 선거법 조항에서 굉장히 후퇴하고 폐쇄적으로 운영하시는 그런 것이예요. 국민경선이 아닌 것은 위탁할 수 없다. 완전 국민경선만 위탁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하신단 말씀이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그러니까 이를 태면 이러한 것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를 여쭙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경선, 완전 국민경선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가, 그것이 국민의 의사를 진정 제대로 수렴하는 방법인가에 대한 검토 그것은 정치권에서 그냥 알아서 하면 되는 건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이 전제는요, 후보자 선출 과정의 민주성을 확보한 경선, 완전 국민경선의 전제는 뭐냐 하면 정당의 자율입니다. 정당의 자율에서 맡기라는 것이고요. 지금도……

○**박선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질문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셨는데 기존에는요 완전 국민경선이든 부분 국민경선이든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제는 완전 국민경선만 위탁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하시는 것이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예.

○**박선숙 위원** 그런데 문제는 말로 얼핏 보기에 완전 국민경선이 굉장히 민주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기존 정치인들,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분들에게만 훨씬 유리한 방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진 인사들은 인지도가 없어서 이 완전 국민경선에 곧바로 투입될 경우에 훨씬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 방법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정치권 내부에 있습니다.

굉장히 구호적으로, 그야말로 국민들이 얼핏

듣기에 듣기 좋은 소리로 ‘모두 국민께 맡기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참 듣기는 좋은데요, 그 듣기 좋은 것이 정말 국민들에게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것은 저는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이 완전 국민경선일 경우에만 위탁할 수 있다라고 제한된 것에 관해서는 완전 국민경선이든 앞서 우리 박기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권연대 등과 관련해서 다양한 방법을 논의하고 있는 그런 논의의 현황들을 고려할 때도 부분 국민경선이든 위탁사무에 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예.

○**박선숙 위원** 제가 다른 것 하나 또 여쭙 볼게요.

앞서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2만 명 이상일 때 공관 이외의 투표소 설치 문제는 사실 독일·캐나다·중국 같은 경우에 공관 이외의 투표소 설치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형평성의 근본 문제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중국·캐나다·독일의 유권자들에게 불이익을 준 선거의 결과가 형평한 선거인가? 권리가 침해되고 제한된 것이 아닌가에 대한 근본 문제에 대해서 답을 갖지 않으시면 그 외의 곳에서만 2만 명 이외의 기표소 설치하는 다시 한번 검토하시는 것이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그 부분은 재외국민 간의 형평성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박선숙 위원** 아니, 그것은 검토를 더 하세요. 지금 당장에 답변하셔서…… 왜냐하면 기존의 답변을 반복하시면 그것은 제가 지금 드린 질문에 대한 답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는 게 필요하세요.

그리고요 선상투표 문제에 대한 논의는 제가 이전 정개특위의 논의 과정에 있었습니다마는 여야가 선상투표의 취지에 동의를 한 것이예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굉장히 여러 번 깊이 논의를 했는데 우편투표가 가능하다면 우편투표에 대해서는 사실 여야가 이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편투표가 불가능하게 오랫동안 해상에 체류하는 분들의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경우에 팩시

밀리 투표를 추진했었는데 팩시밀리 투표는 기본적으로 비밀투표의 원칙이 얼마큼 보장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을 못 하셨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팩시밀리 전송방식이라는 것이 각각의 그 투표하는 분과 그다음에 그 투표지를 받아 내는 사람 간의 비밀투표 보장에 관한 별도의 답을 갖고 오셔야 다시 논의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일단 질문드려 놓고요 답변은 나중에 좀 들겠습니다.

정치자금법 관련해서요 애초에 정치자금법상에서는 선거법상에서 선관위가 자료를 요구하면 금융실명제법에서 예외로 열거해서, 감사원 등과 마찬가지로 열거해서 후원금 납부된 계좌의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선거법이 다시 개정되면서, 그때 기존의 법에서는 선관위가 금융기관에 요구한 후원금의 계좌 내역에 관해서 선관위에 제공하고 난 다음에 계좌 명의인과 그다음에 계좌에다 입금한 입금자까지에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법에서는 통보를 생략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통보를 생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법의 미비이고 과잉입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정무위원회에서 금융실명제법에 기존 법대로 선관위도 감사원 등과 마찬가지로 금융기관들의 자료를 요구할 수는 있으나 그 요구한 자료에 관해서 계좌 명의인과 입금자에게 선관위에 자료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기존 절차를 회복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법을 통과시켜서 법사위에 보내 냈으니까요 관련해서 선관위가 적절한 의견을 내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경재 박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한나라당의 여상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상규 위원 남해·하동 출신 여상규입니다.

존경하는 노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연장선상에서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총장님,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예.

○여상규 위원 인구적 요소를 고려해야 될 것이고 또 비인구적 요소도 고려해야 되겠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예.

○여상규 위원 인구적 요소만 고려한다면 편차는 어느 정도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그 부분을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인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현재의 결정에서는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인구적 요소와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할 수 있지만 인구적 요소가 가장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기준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평균 인구수의 상·하위 3 대 1을 벗어나면 안 된다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올리기 좀……

○여상규 위원 예, 현재 판결을 금과옥조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예.

○여상규 위원 여러 가지 국가 정책적인 목표들을 가지고 선거구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어디까지나 현재 판결에서 제시한 3 대 1의 기준은 하나의 예시적인 그런 기준으로 보면 된다 이렇게 보고 정책을 입안하셔야 됩니다.

비인구적 요소 중에 고려해야 될 것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그건 뭐 행정구역이나 지세나 교통 이런 부분이 비인구적 요소라고 할 수 있겠지요.

○여상규 위원 예, 독립된 지자체의 행정, 그리고 교통이나 지리, 그리고 면적 이런 것들이 고려돼야 되겠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예.

○여상규 위원 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해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살기 좋은 곳에 인구들이 많이 몰리니까 그곳에는 그 사람들을 대변할 국회의원도 많이 뽑아야 된다. 옳습니까?

지금 예컨대 예를 들어서 충청도의 인구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된다. 영·호남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국회의원 숫자를 줄여야 된다. 맞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그래서 상한선 하한선이 안 있겠습니까?

○여상규 위원 상한선 하한선을 지금 3 대 1로 고정시켜서 이야기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예, 그렇습니다.

○여상규 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그러면 대도시 지역 국회의원들만 몽땅 몰려 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을 위하는 길입니까?

지금 하나 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정치제도도 고려해야 됩니다. 지금 상하 양원제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상원제는 인구와 아무 상관없이 행정구역에 따라서 대표를 뽑고 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예.

○여상규 위원 그거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미국의 경우에 알래스카나 하와이나 인구 몇 명 되지도 않는 데도 2명이고 그 인구의 수십 배가 되는 뉴욕주나 캘리포니아주도 2명 아닙니까? 그럴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또 그러는 것이 정의에 부합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고려해야지 전혀 인구만 따져 가지고 말이지……

그렇다면 농어촌지역의 국회의원이 앞으로 몇 명이나 남아나겠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이 공직선거법에는 인구 외 행정구역이나 지리나 교통이나 기타 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정개특위에서 충분히 논의할 예정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상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입법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현재 판결이 3 대 1이다, 4 대 1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는 법을 만드는 것은 곧 위헌이다. 이것은 아닙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예.

○여상규 위원 그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광역의원 숫자가 원래 시·군에서 두 명씩 뽑는 걸로 운영이 되어 왔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예.

○여상규 위원 상·하원 있는 나라에서 상원제 처럼 그렇게 뽑아 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인구 비례로 지금 바꿨잖아요? 이것 역시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독립된 행정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존중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게 됐어요.

하나 비근한 예로 도의원이나 광역시의원의 경우에 1인당 지급하는 포괄사업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예컨대 인구가 많은 시의 경우에는 광역의원이 5명이다. 인구가 적은 군의 경우에는 1명이다. 당장 도에서 지급하는 포괄사업비 예산이 5 대 1의 편차를 보이는데 이게 정의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세요?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생각 없으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이번에 저희들도 정개특위 기간 중에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상규 위원 검토를 하시고요, 개선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들 각자가 정치자금을 모금해서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예.

○여상규 위원 이게 좀 잘못되는 것 같습니다. 운용도 잘못되는 것 같고요.

선관위에서 정치자금을 모금해 가지고 국회의원들에게 배분하는 그런 정치자금공영제를 실시할 의향 없으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그 부분은 처음 들어 보는 제도인 것 같은데요.

○여상규 위원 처음 들어 보는 제도는 아닐 텐데요. 얼마 전에 비슷한, 약간 그런 쪽에 좀 근접하는 법 개정안을 냈다가 철회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예.

○여상규 위원 왜 철회하셨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이 부분은 한번 별도로…… 저희 정치자금후원제도의 새로운 제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번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상규 위원 예, 그것도 검토하시고요.

오히려 그렇게 가는 것이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회의원들 보고 일일이 돈 걷어 가지고 정치하라 하면 잘못돼 갑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다만 선거공영제, 국회의원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그것이 입법부의 속 안에서 해야 될지 선관위가 해야 될지 그 부분을 모르겠는데요, 새로운 방안이니까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상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여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류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찬 위원** 충청남도 보령·서천, 서천·보령 출신입니다. 류근찬입니다.

자, 오늘 정치개혁 관련 법률개정안 의견을 낸 것과 관련해서 제가 석패율제도가 포함된 부분을 좀 질의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예.

○**류근찬 위원** 자, 기억나실 겁니다마는 지난 3월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업과 단체 정치후원금을 허용하는 쪽으로 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을 내려다가 이게 무산됐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무산이라는 게 저희들이……

○**류근찬 위원** 아니, 오늘 안 올라온 것 보니까 일단 무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예, 개정 의견이 미반영이 되었습니다.

○**류근찬 위원**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예.

○**류근찬 위원** 반영이 안 되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예.

○**류근찬 위원** 기억하실 겁니다. 이 발표가 언론을 타고 보도되니까 즉각 청와대가 반대의견을 냈었지요? 청와대가 반대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언론에……

○**류근찬 위원** 그렇습니다. 청와대가 반대했고 심지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권에 청부입법을 획책하고 있다’고 하는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을 중앙선거위가 받았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예.

○**류근찬 위원** 자, 그런데 이 선관위의 반응이 저는 아주 우습다는 그 얘기를 먼저 합니다. 마치 없던 일처럼 이걸 슬그머니 철회를 했어요. 결과는 오늘 의견으로 가져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저는 철회했다고 표현을 합니다마는, 그때 철회하면서 선관위가 밝힌 변이 뭐냐 하면…… 기억하십니까, 선관위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국민적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예.

○**류근찬 위원** 자, 그런데 오늘 선관위가 제출

한 이 법률개정안 의견을 보면, 공직선거법 가운데 이른바 ‘석패율제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석패율제도가 공론화된 그 추이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선관위가 이것을 공론화시킨 과정을 보면 더더욱 기가 막히고요. 한나라당이나 청와대 다급한 모습을 공론화 과정에서 우리는, 국민들은 똑똑히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지난 2월 20일 날 대통령과 한나라당 최고위원 만찬에서 ‘석패율을 위하여’라고 하는 건배 구호가 있었다는 신문보도 보셨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예.

○**류근찬 위원** 그것 있었다고 그렇습니다. 저는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보도를 통해서 그걸 봤다…… 뒤이어서 이재오 특임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야가 전국 정당이 되려면 이 석패율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역설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안상수 전 대표가 이 논리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계속해서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호남 출신인 정운찬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전북대학교에서 관련 토론회를 또 열어서 군불을 땀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지금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총장님?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

○**류근찬 위원** 어떠십니까? 제가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지요? 시간이 넘어가는데……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막상 이 석패율제도를 들고 나온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다’ 하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정 의견을 낼 수가 있다는 거를 잘 압니다. 그런데 이런 절박한 사정 같으면 한나라당이 법률개정안을 내야지요. 선관위가 지금 이 군불을 땀 거를 받아서 의견을 낼 일이 아니라, 이래서 오해를 받는 겁니다, 지금.

과연 선관위가 공정한 선거관리를 맡은 헌법기관이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집권당이나 청와대 하수인을 지금 자칭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다는 거를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위원님, 그것의 인과관계가 시차적으로 어찌 되는가를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지역구결합 비례대표제, 그거

를 일명 한국의 석패율제라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초부터 검토를 하고 있었 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개정 논의과정에 있는 거를 가지고 나갔는데, 그 이후에 그런 토론회 가……

○**류근찬 위원** 아, 청와대에서 견배 구호를 외 친 것도 2월 달이니까요! 2월 달이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그거는 저희들이 먼저 개정안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류근찬 위원** 하여튼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 에……

자, 오늘 낸 의견 가운데 이 제도의 당위나 필 요성을 강조한 부분이 ‘지역주의 해소’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역주의를 해소하겠다는 그런 뜻이지 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예.

○**류근찬 위원**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석패 율제도가 없어서 지금까지 지역주의가 이렇게 만 연되어 있고 또 이렇게 아주 고착화되어 있고…… 만연된 지역주의를 석패율 가지고 일거에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그렇습니 다. 지역주의가 석패율 하나 가지고 완전히 해소 된다, 그거는 뭐 정답이 아닐 것 같습니다. 지역 주의는 어떤 사회 전반적인……

○**류근찬 위원** 자, 거기까지 답변되었습니다. 유 효하거나 실효성은 그다지 없다는 말씀을 하신 거지요, 이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류근찬 위원** 아니, 그러면 정확히 말씀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아니요, 그래서 지역주의를 완전 타파하려는 것 같으면 다른 이런 사회 전반적인 변화를 통해서 극복되 어야 하지만 선거영역에서 선거가 있을 때마다 이런 특정 지역에서의 특정 편중 현상이 반복되 어지니까 선거영역에서나마 지역주의를 완화하는 방안을 찾자……

○**류근찬 위원** 그런데 문제는 선관위가 왜 지역 주의에 방점을 둬니까? 정치개혁과 관련된 선거 제도를 유지하는, 어떻게 개혁해서 선거제도를 만들 거냐에 대한 얘기를 해야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공직선거 법은……

○**류근찬 위원** 예컨대, 이겁니다. 지금 비례대표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 아닙니까, 이 제도 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아니, 그 부분은 차이가 있는 건데요.

○**류근찬 위원** 왜 차이가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공직선거 법 1조(목적)이 뭐냐 하면요,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발전 조건 은 지역주의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포함되고요. 다 만……

○**류근찬 위원** 자, 총장님, 그렇게 얘기하지 말 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자니까요.

54명의 비례대표를 이런 방법으로 8명이건 9명 이건 지역구에서 낙선한 사람을 당선시키는 데 써 버리면…… 지금 직능대표나 소수 약자를 대 변하는 그 용도로 비례대표제가 존재하는 것 아 니니까? 그 인원수가 급격히 줄어드는데, 결국 이거는 비례대표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제도다, 그렇게 보는 겁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이렇습니 다. 제가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2표의, 정당표의 득표수를 가지고 현재와 똑같이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분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류근찬 위원** 그걸 모르는 것 아니예요. 알 아 요. 내가 이 표도 봤어요. 봤는데, 결과적으로 지 역구에서 낙선한 사람을 비례대표로 구제하려 면……

선관위가 지금 2008년도 총선 모델을 가지고 해 보니까 민주당이 영남에서 몇 석, 한나라당이 호남에서 몇 석, 그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합 쳐 보니까 한 10석쯤 되는데 그 10석만큼 비례대 표 54개 가운데 떼 가는 것 아니냐 그거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그런데 그거는 정당에서 지역구결합 비례대표를 갖다가 추천하든지 뭐 전문가나 직능대표를 하든지 그 부분은 정당의 자율이니까……

○**류근찬 위원** 이 제도가 선관위대로 추진되려 면 비례대표 인원수를 대폭 늘려 놔야 됩니다. 그게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역구 의원 수를 줄이고 그만큼

비례대표에다가 지역구 의원을 보태서 비례대표석을 늘려 놓고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지금 54석을 가지고 비례대표를 나누는데 이런 얼토당토않은 제도를 가지고 들어와서 직능대표나 여성, 약자들에게 등원 기회를 주는 제도를 망가뜨려 가지고 되겠느냐 그거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이 부분은 출발이 그렇습니다. 전제가요, 지금 현행 선거……

○**류근찬 위원** 자,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예.

○**류근찬 위원** 이 의견 철회할 용의 없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저희들은 뭐……

○**류근찬 위원** 이거 국민들로부터도 지금 용납받기 어려운 제도를 가지고 선관위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부·청와대…… 쉽게, 좀 세게 얘기하면 청부입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안은 철회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경재** 이 정도로 하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예.

○**위원장 이경재** 류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미래희망연대의 김혜성입니다.

총장님, 재외선거에 대한 그 선관위 이번에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저희가 보면 주로 재외선거의 편의성 증대에 초점을 맞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우선적으로는 입법화 단계에서부터 편의보다는 처음 실시하니까 공정성 쪽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그러다 보니까 절차적인 부분은 너무 엄격하게 지금 법규정이 돼 가지고 있고요. 선거운동의 공정성 부분은 제도적, 현실적인 근거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재외국민들이라

든지 학계에서 공정성이 담보된 범위 안에서 투표의 편의를 일부 반영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몇몇 부분을 그런 쪽으로, 편의 쪽으로 제한적으로 문을 좀 열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김혜성 위원** 저는 그 공정성 확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먼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것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도 좀 강화될 필요도 있고요.

또 그중의 하나가 아까 김정훈 위원님이라든가 또 박준선 위원님인가 이렇게 하는 분들이 얘기하신, 제기하신 영사조사제도에 대한 얘기가 있으셨습니다.

아까 얘기하시다가, 제가 그걸 좀 들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3월 24일 선관위에서 주최한 정치관계법 개정 토론회에서 보면 영사조사제도에 대한 도입 필요성에 대한 발제가 있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예.

○**김혜성 위원** 또 그때 윤석근 정책관계서 ‘영사조사제도를 구체화하는 국내법 규정 마련 등 제도개선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제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토론자들도 일부 현실적인 한계가 있긴 하지만 이 제도에 대한 도입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인정하는 방향으로 토론회가 진행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개정 의견에서 이 부분이 누락이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국외 선거사범에 대한 영사제도를 검토를 할 때는 지금 법원만이 할 수 있는 영사제도를 조금 확대하면서, 확대하는 것으로, 재판과정에서 증거능력을 이렇게 들 수 있도록, 특별규정을 두는 것으로 해 가지고 영사조사가 검토가 되었습니다.

○**김혜성 위원** 아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그런데 이제 영사조사제도를 하려고 하니까 한계가 뭐냐 하면 증거조사를 위해서는 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승인을 받다 보면 실질적인 활용의 한계가 있고 우리나라의 국내 사법절차와 이게 부합되지 않는다는 많은 지적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 그런 이유 때문에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저희들은 영사제도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증거능력의 특별규정을 이렇게 함께 검토해

가지고 도입이 가능하다면 국내 선거사범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도 될 것이고 또 그것을 둠으로 해서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선거범죄를 예방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번에 정개특위에서 같이 한번 검토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혜성 위원** 이런 영사조사제도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고 계신 거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저희도 실무자 쪽에서는 뭐 그런 쪽으로 좀 일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제가 보기에 영사조사제도 도입과 더불어서 해외에서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 부여가 함께 검토가 되는 그런 어떤 규정이 좀 신설돼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거는 뭐 지엽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아까 얘기한 공정성 확보나 편의성 증대나 하는 측면에서 등록신청 순회접수와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등록과 투표, 이 두 가지로 분류해서 봐야 되는데 두 가지로 분류해서 보면 두 가지를 다…… 예를 들어서 투표소를 뭐 공관으로 지정했을 경우에 두 번 다 공관을 방문을 해야 되는 불편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예.

○**김혜성 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한 편의성 증대에는 좀 저해되는 요소라고 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이것 보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등록을…… 지금 등록도 공관에서 하고 투표도 공관에서 하는데 등록을 우편이나 이메일로 하고 투표를 할 때 뭐 한 번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김혜성 위원** (고개를 끄덕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그런데 지금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했을 경우에 우리가 재외선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불법적 복수국적자가 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어떻게 배제할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요.

○**김혜성 위원**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그것이 나중에 선거 결과를……

그래서 불법적 복수국적자를 갖다가 등록신청할 때 철저히 확인하고 검증을 해야 되는데 우편이라든지 이메일로 했을 경우에 그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명부가 확정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투표하러 와 가지고 선거권이 없다, 그런 것 같으면 어떤 투표의 질서라든지 상당히 혼란이 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신청이 많아요. 공관 직원을 통해서 순회접수를 하는, 이런 부분으로 저희들도 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아마 이번에 첫 번째 실시되는 재외선거가 공정성 확보와 편의성 증대, 그 두 가지 갈림길에서 여러 가지 고민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가져다주는 공정성 확보가 저해가 됐을 때 오는 여러 가지의 혼란상황을 생각을 해 본다면 편의성도 증대돼야 되지만 공정성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서 이 이외에 공정성과 관련돼 있거나 편의성과 관련된 요소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재**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순서를 마쳤는데요, 혹시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류근찬 위원** 제가 조금……

○**위원장 이경재** 예, 류근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찬 위원** 총장님, 아까 시간이 없어서 충분히 말씀을 못 했는데 보충질의로 한 두어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모두 답변에 총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기업의 정치자금 후원금을 허용하는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관위가 뭐 철회라는 말에 동의는 안 하십디다라는 아무튼 지금 이번 의견에 제출이 안 됐다, 그런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예, 미반영이 됐습니다.

○**류근찬 위원** 그렇지요?

자, 그러면 석패율제도를 지금 개정 의견으로 제출한 것은 이 석패율제도가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졌다, 형성됐다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어떠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개정 의견을 만들고 그다음에 3월 달에 토론회를 한 번 실시했습니다. 지역구결합 비례대표제하고 석패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라든지 학자든지 전반적이고 총론적으로는 다, 일부가 많은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만 지역주의를 완화하는 부분에서는 그것이 어렵…… 지금 현 제도하에서 하는 데에는 적절한 대안이다, 다만 다음 19대에서는 독일의 정당 명부나 일본의 권역별 비례대표라든지, 이런 것을 총론화해 가지고 심층 있게 할 필요가 있다……

○**류근찬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것 유념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그러나 현재의 현 실정에서는 지역구……

○**류근찬 위원** 좀 시기상조다, 그런 결론 나온 것 아닙니까,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아니, 이 부분이……

○**류근찬 위원** 왜? 그것 맞지요. 제가 선관위 토론회도 봤고 우리 위원회 토론회도 했고 우리 당에서도 토론회를 했고 한나라당 내 친박 계열의 무슨 모임에서도 이 토론회를 했는데, 전체적인 결론은 ‘완벽한 제도를 정비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럴 시간적 여유나 여건이 잘 안 되니 이거는 실시하는 좀 시기상조다’ 하는 얘기이고 시민단체나 재야 정치학자들이나 정치단체도 이걸 반대하고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민적 합의가 아직 도출이 안 된 제도를 지금 갖고 들어왔는데 제가…… 총장께서 자꾸 지역주의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선관위도 사실 속내는 이 제도가 지역주의 완화에 있지 않다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3월 29일 날 우리 위원회가 개최한 공청회 때 우리 추형관 법제관 나오셨지요? 그때 어떤 말씀을 했냐면, ‘지난 99년에 선관위가 지역구는 소선거구제로, 비례대표는 7개 권역으로 하자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채택되지 않았다. 이번에 석패율제도를 제시한 것은 이런 제도들이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 기본 제도를 유지하면서 하자는 교육지책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맞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기획관 추형관** 그런 얘기를……

○**류근찬 위원** 예, 그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메모를 한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인용을 한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다시 바꿔 얘기하면 선관위에서 조차도 지금 이 석패율제도가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기획관 추형관** 아, 그건……

○**류근찬 위원** 이것 옛날에 한 번 소선거구제하고 권역별 비례대표 7개 지역으로 나눠서 하려고 하는 걸 도입하려다가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이 제도를 갖고 들어온 것은 교육지책의 일환이다, 그 얘기 아니에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기획관 추형관** 아니,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거는 취지가 뭐냐 하면, 그런 요지의 말씀을 드렸습시다라는 현실적으로 지금 각각의 의원님들이 이야기하는 지역구를 줄이는 문제 그다음에 비례대표를 전체 의원 정수를 늘리는 이런 부분들이 국민이라든지 정치권에서 합의가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런 지역주의를 완화하기 위한 가장 지금 현재의 어떤 대안이 무엇인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류근찬 위원** 그러니까 정당의 지역편중을 완화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 저는.

예컨대 지역편중을 완화할 수는 있지만 지역주의를 해소하겠다 하는 제도다? 그건 종로 길바다에 지나가는 사람 다 물어보세요, 이 제도가 과연 지역주의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는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그건 맞습니다.

○**류근찬 위원** 지역편중은 해소할 수 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지역편중 현상을 일부 선거영역에서 완화하자라는 그것입니다.

○**류근찬 위원** 해소할 수 있지만 그건 지역주의하고 전혀 다른 것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위원님께서 지역주의 타파의 효과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했는데, 특정지역의 지역편중 현상을 선거영역에서라도 일부 완화하는 방

안이다, 그것이 전제는 뭐냐? 현 제도의 틀 속에서 선거……

○류근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론은 한나라당이 호남에서 세 석, 네 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비례대표를 통해서 석패율제도로 의원을 확보했다 해서 영·호남 지역감정이 해소되겠냐 그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다만 한나라당이 호남에서 전혀 없던 것을 세 석, 네 석을 갖고 있는 편중 현상은 해소되겠지요, 그렇지요?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편중 현상에서 일부 단초는 되겠지요.

○류근찬 위원 되겠지요, 그것은 저한테 지금 질문하시는 겁니까? 제가 지금 총장 의견을 묻는 겁니다.

그리고 선관위가 지금 석패율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네다섯 가지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이 제도만 덜컥 갖고 오면 이 선거제도 이렇게 왜곡시키는 데 일조를 선관위가 하는 겁니다.

네다섯 개 문제 아시지요, 지금 선관위가 파악하고 있는 이 제도의 문제점? 있어요. 선관위가 지난 토론회 때 이야기한 것을 종합해 보면 네다섯 개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선관위가. 이 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들고 오지 않았다 그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다시 말씀드리면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 제도에 대한 의견은 철회해야 마땅하다 하는 결론을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재 류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 민주노동당 창원을 출신 권영길 위원입니다.

우선 사실관계를 확인 한 두 가지 하고 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재외선거에, 20쪽에 보면 재외선거 등록신청 신고기간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2012년 국회의원선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했는데

2012년 것은 대선만 상정하고 국회의원선거는 2012년에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등록신청 확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확대를……

○권영길 위원 확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예.

○권영길 위원 2012년 국회의원, 대선 다 하는데 확대는 대선에만 적용한다 이 이야기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예, 지금은 불과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추기……

○권영길 위원 이것은 질의 아니니까 확인하고 계산을 7분……

○위원장 이경재 질의에 포함됩니다.

○권영길 위원 그다음에 국민경선에 아까 보면 교섭단체가 전부 참여할 경우에만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교섭단체가 다 참여하고 비교섭단체는 제외하는 겁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대통령선거에서요?

○권영길 위원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지금 여기에는 국민경선을 실시하는 것은…… 국고보조금 배분 정당이 지금 9개 정당인가 될 겁니다. 이것을 선관위 위탁하면, 우리가 다 위탁을 하면 같은 날 동시에 실시하게 되어 있고요. 다만 대통령선거일 경우에는……

○권영길 위원 아니, 내용이 아니고 사실관계, 이 문맥의 표현이 정확한 게 뭐냐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원천적으로 국민경선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마는 사실관계 확인만이거든요.

지금 여기에 명기한 것은 ‘교섭단체가 모두 참여하면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대통령선거이기 때문에 교섭단체가 아니라 비교섭단체 후보들 다 있고 그렇단 말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 위원 제가 세 번 출마했잖아요. 그러니까 비교섭단체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지요? 비교섭단체도 정당인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그것은 그러면 경선을 실시하지 않는 겁니다.

○권영길 위원 그러면 제외시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비교섭단체는 아예 제외시킨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아니, 나는 제외시킨다는 게 아니고 교섭단체 할 때 같이 하면, 위탁이 오면 같이 하고요, 교섭단체가 안 왔을 경우에 못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위원장 이경재** 교섭단체 두 단체가 참여를 하면 비교섭단체도 같이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권영길 위원** 그런 뜻인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저도 그런 뜻으로 답변을 드렸는데요.

○**권영길 위원** 정확하게, 이것 나중에 그런 논의과정에서 정확하게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장께서는 지난번 석패율제에 대한 공청회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제기된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중앙선거위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이 석패율제에 대한 공청회가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 류근찬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여러 정당에서 또는 개별 의원 단위로 또는 어떤 시민단체 단위로 또는 우리 국회 공식적으로 있었는데 그때 제기됐던 문제점들을 다 파악하고 계시나 이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다 망라하는 못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 위원**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저희들이 공청회를 했을 때 가장 큰 부분은 선거제도는, 이것도 비례대표 선거제니까요.

○**권영길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의 정신이 훼손되고 특히 소수자를 반영하는 것이 제대로 안 된다는 점이거든요. 석패율제라는 것은 지역주의를 완화하자는 것 아닙니까? 지역편중 현상을 완화하자, 구체적으로는 영남에서는 비한나라당 의원을 제도를 통해서 배출시키자, 호남지역에서는 비민주당 의원을 배출시켜 보도록 하자 이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예.

○**권영길 위원** 물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있어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비례대표 취지에 반한 것이다 이거지요. 이 비례대표 취지에 반한다고 그랬더니 지난번 우리 김 실장이었나요, 그때 선관위 해석할 때는 이 사람들도 비례대표 지역

에 출마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출마를 해야 되는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 출마를 해서 그분들이 다 다시 이 대상이 된다고 봐지나요? 예를 들자면 여성 또는 장애인 이런 분들도 다 출마를 해야 되는데, 1번을 제외하고,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 그런데 지금 여성 의원 비율을 보면 1번은 물론 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 명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희 민주노동당을 보면 17대 때는 비례가 8명이었습니다. 18대 때는 5명이거든요. 그중에 우리는 반 이상이 여성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던 말이지요. 그러면 이 한 명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이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려면 석패율제 적용받으려면 호남이든 영남이든 출마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지역구 결합 비례대표 후보자로 가려고 하면 지역구에 출마를……

○**권영길 위원** 출마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런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예, 그렇게 안 하고 여성분일 경우에는 여성분은 현재 비례대표가 홀수로 되어 있으니까……

○**권영길 위원** 여성 아니라도 전문가들도 마찬가지로 이거지요, 여성을 강조를 했는데.

다음에 부산을 보면 지난번에 한나라당에 표를 던진 사람이 얼마일 것 같아요? 52%입니다. 52%예요. 그런데 한나라당이 부산에서 실제 얻은 의석수는 18명 중에서 17석을 차지했어요. 실질적으로 표는 50% 정도를 받았는데 의석은 94%를 받은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 현재 이 선거제도가 기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지금 현재 이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히려 정말로 지역주의를 근본적으로 고치려고 그런다면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확대한다든지 다른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제도에 대해서는 모두가 장단점이 안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시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입

법권을 가지신 입법권자이신 국회에서 특히 정개 특위에서 그 부분을 충분히 더, 저희들보다도 더 심각하게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권영길 위원 앞으로 논의해서 국회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이지요. 제가 첫머리에 지적한 것처럼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 제기가 저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가 오늘 정치관계법 개정의 핵심사안으로 제기했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석패율제도는 선거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성에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호남의 한 지역에서 민주당·민주노동당·한나라당 후보가 43%, 41%, 11% 각각 득표를 했다고 가정하면 석패율제하에서는 41%를 얻은 후보는 떨어지고 11%를 얻은 후보는 당선될 수 있는 이런 정책이 된다 이거지요. 이것도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제기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중앙선관위가 고집을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그 부분은, 예시 부분은 조금 의견이 달리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권영길 위원 그것은 나중에 다룰 때 국회에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관계법 개정에 대해서 석패율제하고 국민경선제 실시가 핵심적인 사항인 것 같아요. 석패율제에 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전국동시국민경선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것 선거를 두 번 하는 것하고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섭단체에 참여를 하고, 아까 비교섭단체도 참여의 길이 열린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무소속을 제외하고는 국고보조금을 받는 모든 정당은 다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예.

○권영길 위원 이런 경우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이것은 국가 대선이니까 중앙선관위, 각 지역선관위 다 관여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예.

○권영길 위원 선거 관여 위원회가 다 하고, 그다음에 행정·재정적 부담 국가가 다 부담을 하

고,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전 유권자가 참여를 않지만 사실상 대선이 소규모로 축소된 선거가 한번 있고 그다음에 다시 한 번 있고 하는 것이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오히려 뭐냐 하면 정당 민주주의를 신장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즉 진성당원들이 다 있고 정당이라면 책임정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당원들이 전부 모여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하고 그리고 당원들이 선출해서 상향식 공천하도록 하고 위에서 이렇게 내리꽂기 식 공천제도를 없애도록 하고 하는 것이 시급하고 그것이 오히려 정치개혁의 핵심 아니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달리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도 순수한 당내경선을 하는 부분도 있고 국민참여경선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완전 국민참여경선 이번에 왔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어떤 국민의 정치 참여,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기여하는 정당의 본질적인 기능 이런 데 또 근접할 수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르게 되는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의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도 크게 보면 하나의 민주적인 발전을 위한 민주주의의 투자비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다양한 방법으로 될 수, 그러니까 꼭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경재 권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위원님들의 질의는 끝났는데요. 한 가지 저도 질문을 좀 드려 보겠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민경선과 관련해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모두 참여한 경우에만 국민경선을 실시한다, 이것의 이유를 댄다면 어떤 이유가 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지금 대통령선거일 경우에 국민경선을 하면 사실상 대선 후보자의 어떤 사전 선거운동, 홍보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을 거니까 국민경선을 함으로써 후보자들의 홍보효과가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주요 정당이 모두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고요, 또 한편

으로는 역선택을, 공정경쟁이 될 수 없도록 하는 역선택을 방지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부분을 저희가……

○**위원장 이경재** 지금 국민경선제를 주장하는 정당에서는 하여튼 이런 것을 통해서 좀 선거의 우위를 점하겠다, 말하자면 국민 홍보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한쪽에만 특혜를 줄 수 없다 그런 뜻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그게 본질적으로 이에 깔린 바탕에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경재** 그러면 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 국회의원선거도 마찬가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이걸 대통령선거의 경우만……

○**위원장 이경재**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선거에서는 그렇고,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도 한쪽 당만 국민경선제를 허용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 안에 의하면? 그러면 한쪽은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역선택의 문제를 유발하는데 왜 그것은 안 하고 이것만 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법정신의 논리의 일관성이 없지 않나,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지요?

실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실장 김용희** 위원장님, 답변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회의원선거나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경우에는 대통령선거와 달리 각 지역별로 경쟁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국민경선이 실효성이 있는 지역은 영남이나 호남지역처럼 어느 한 일당이 독점적으로 당선자를 낼 수 있는 그런 지역의 경우에 오히려 더 필요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컨대 호남지역이나 영남지역 이런 지역에서 어느 한 정당만 참여의사를 표시하고 나머지 정당이 참여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경선을 못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위원장 이경재** 이 선거방법론에 있어서 지금 어느 지역은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런 측면이 아니고 동일한 기준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중부지역의 경우에 여야가 아주 팽팽할 때 한쪽, 국회의원이 다른 쪽에서는 경선을 안 하는데 이쪽 당만 혼자 경선을 한다라고 할 때 아까 사전 선거운동도 될 뿐 아니라 역선택의 문제도 생길 수 있다 이 부분은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문제인데, 지금 호남이다 영남이다 하는 논리는 내가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실장 김용희** 그 부분에 있어서는 중부권이나 이런 지역의 경우에는 사실 국민경선을 유도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정당의 경우에는 그만큼 본선에서 홍보의 기회가 줄기 때문에 같이 참여를 유도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류근찬 위원** 선관위가 그것까지 걱정할 일은 없잖아요. 참 이상한 논리네. 밤잠도 못 자고 그것을 걱정합니까?

○**위원장 이경재** 그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주요 교섭단체가 같이 참여해야 같이 경선을 하게 한다든가 그래야 대통령선거하고 맞지 않느냐, 교섭단체가 현재 둘인데 그럴 경우에는 다른 비교섭단체도 비교섭정당도 거기 참여하고 싶으면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야 일관성이 있는 것 아닌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실장 김용희** 위원장님, 저희가 의견을 마련을 할 때는 이러저러한 의견들을 모아서 그와 같은 최종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했지만 정개특위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경재**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납득이 안 가서 좀 문제 제기합니다.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안효대 위원님의 서면질의에 대하여 중앙선관위에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중앙선관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중앙선관위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과 관심사항을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법안심사활동을 하시는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경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던 정치관계법 중 재외국민선거제도와 관련하여 간사 위원간에 협의를 거쳐서 국회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 재외국민선거제도에 관한 공청회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서 참석해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공청회의 주제가 된 재외국민선거는 2012년도에 사상 처음 도입되는 제도로서 투표 방법,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방법, 선거 홍보, 부정선거 단속, 영주권자의 지역구 국회의원선거권 부여 등 여러 가지 쟁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쟁점에 대하여 적절한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 공청회의 취지라는 점을 진술인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진술인 여러분께서 평소에 쌓으신 학식과 경륜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줌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입법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재외국민선거제도에 관한 공청회

○위원장 이경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재외국민선거제도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한다는 점을 진술인 여러분께 참고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를 위해 참석하신 네 분의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술인의 좌석은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배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신라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강경태 교수님입니다.

다음은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명호 교수

님입니다.

다음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방승주 교수님입니다.

다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훈교 재외선거기획관입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으로 진술인 소개를 마치고 공청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10분 범위 내에서 발표해 주시고 진술이 모두 끝나면 일문일답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회법상 공청회는 위원회의 회의로 보기 때문에 질의는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만 하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술인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라대학교 강경태 교수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강경태 예, 반갑습니다.

신라대 강경태입니다.

저는 한국재외국민선거연구소를 한 1년여 정도 지금 운영해 오면서 재외국민 숫자 한 290만 명 중에서 미국이 한 110만, 그리고 중국이 한 60만, 그리고 일본이 한 40만 정도 해서 한 반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미국 중국 일본을 저희들이 현지답사, 여론조사를 하면서 느낀 그런 점을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재외국민선거가 도입되면서 해외에 살고 있는 한국 국민들의 반응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화 이후에 지방선거가 도입되고 또 이제는 재외국민선거까지 도입되면서 한국 민주주의가 보다 완벽하게 완성되는 그런 시점에 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세계화 시대를 맞이해서 재외국민들도 한국 정치 영향력 안에 들어옴으로써 한국의 위상이 해외에 널리 확산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멀리 떨어져 있음으로써 또 시간적으로 해외에 체류 기간이 오래됨으로써 한국 정치 현황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어떤 정당, 어떤 후보를 선택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정치가 교민사회에 투입되면서 여러 가지 이합집산 이런 정치세력의 분열이랄까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게

하면서 재외국민선거의 뜻하는 바를 달성하느냐 하는 게 과제인 것 같습니다.

우선 미국 일본 중국에 살고 계시는 재외국민들의 반응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열의가 높다, 이 제도에 대한 지지 의사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여론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력의 격차 때문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데는 스스로도 많은 한계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이미 떠나온 지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공약, 이런 세세한 내용까지 파악하기는 상당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한을 안고 어떻게 투표에 참여하느냐 이런, 스스로 그분들이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홍보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역시 투표율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표율을 현재는 재외 유권자가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재외 유권자로서 신청을 해야 되고 등록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투표의 과정을 거치겠다는 말씀은 현재 신청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 국내에 거주신고가 안 된 영주권자인 경우는 직접 공관을 방문해서 신청해야 되고 그 외에 국외 부재자들은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주신고가 안 된 영주권자가 공관을 방문하라고 하는 이런 제한은 선거를 거의 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표를 하기 위해서 아주 장거리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방문해야 되는 그런 시간적·비용적 그런 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투표하는 것은 공관에서 하게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유권자로서 등록하는 과정은 공관 방문이랄지 우편이랄지 인터넷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열어 주는 것이 혹시 나중에라도 투표하고 싶었는데 그때 등록이나 신고를 못해서 못하게 되는 그런 것은 최소한 막아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투표 방법은 재외공관에서 투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 한인회관 같은 곳을 빌려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외 국민들이 많이 느끼는 것이 우편 투표를 허락해 달라 하는 그런 여론이 여론조사나 전문가 면담을 해 보면 집중적으로 나오는 바람입니다.

우편 투표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두말할 가치가 없겠습니다. 선거라는 것이 투표율의 향상도 중요하지만 역시 공정성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200개국 정도에 걸쳐 있는 다양한 지역의 유권자들이 투표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 확인이 가능한 공관투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편이라는 것이 제날짜에 반드시 도달한다는 그런 확신이 반드시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최소한 내년에 실시되는 선거에서만은 공관투표를 하고 4년 뒤에 실시되는 두 번째 선거부터는 우편투표를 도입하는 것이 선거관리의 공정성 면에서 또 확실성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외국민들의 투표 참여 열기를 확산시키는 의미에서 공관투표만 허락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철차 이런 것처럼 차량을, 버스를 이용한 순회투표를 허용하게 하면 어느 일정 수 이상의 교민들이 사는 지역을 버스가 순회해서 투표를 허락하게 하면 어느 정도의 투표율 상승에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관투표와 순회투표를 활용하는 것이 투표율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외선거의 운동방법은 현재 미국이나 중국, 일본 그 외의 나라에 있어서 대부분 아시는 것처럼 방송이나 인터넷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나 방송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학교에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무슨 대자보 같은 이런 것을 활용하는 게 재외선거운동을 활성화시키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후보나 정당 관계자가 직접 방문을 하는 경우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부정적인 요소도 없지 않기 때문에 개별적인 이런 방문보다는 날짜와 시기, 장소를 정해서 공동발표회, 정견발표회 같은 것을 가지는 것이 지역사회의 극심한 어떤 문제점을 막고 제대로 된 정보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해외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시시각각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가 잘 없습니다. 지금 재외국민선거에서 내년에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비례대표 투표도 가능합니다. 해외 국민들은 비례대표제도가 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지역구 투표만 하면

그것이 모여져 가지고 지역구 의석으로 배분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정당을 보고 찍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만나본 해외에 계신 분들은 '왜 이렇게 제도가 복잡하냐. 우리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복잡해지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을 많이 표시하십니다. 그래서 재외국민선거 자체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겠습니까마는 비례대표제도 자체에 대한 홍보도 곁들여서 정부 차원에서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재외국민선거의 활성화를 위해서 본인인증확인시스템이라는 것을 만들면 선거등록이나 투표에 있어서 절차가 간단하고 유권자의 어떤 부정부패, 부정문제를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제도를 제언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시간관계상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재 강경태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호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박명호 동국대 정치행정학부의 박명호입니다.

재외국민선거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민주국가에서 국민주권의 원리가 대의기관과 국가적 현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통해서 실현되기 때문에 선거가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의미 있는 현실적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2012년 총선에서부터 재외국민선거를 도입하게 된 것은 우리 민주주의의 완성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이정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재외국민선거는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도입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에 치러졌던 재외국민선거와 2012년도에 치러지는 재외국민선거에는 그 규모나 또는 정치적 영향력의 측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2012년 총선부터 재외국민선거가 실시될 예정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착실하게 그 준비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선거에 대한 재외동포들의 관심도 높

고 또 참여 열기도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재외국민선거 자체가 본질적으로 우리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서 실시되는 선거이고 선거관리가 국내에서의 선거관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또 선거관리의 경험이 전혀 없는 재외공관에서 투표가 진행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어떤 시점에서 발생할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선거과정의 공정성을 우선할 것인지 아니면 선거참여의 편의성을 우선할 것인지를 문제를 두고 쟁점이 분명하게 노정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원칙 또한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이고 지켜져야 되는 원칙입니다마는 선택의 문제 또는 비중의 문제가 주어진다면 2012년도의 경우에는 공정성 또는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상대적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선거 참여의 편의성 또는 편리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재외국민선거와 관련한 몇 가지 쟁점 중에 가장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바로재외선거인의 등록절차인데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내에 거소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재외선거인이 공관을 직접 방문해서 재외선거인등록 신청을 하도록 현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넓고 또는 광대한 지역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고 두 번에 걸쳐서 공관을 직접 방문해서 유권자 등록을 하고 투표를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순회접수제라든가 또는 접수기간의 확대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선거참여인의 수를 늘리는 방식은 괜찮겠지만 이것이 우편이라든가 또는 그 이외의 방식을 통해서 하게 되면 공정성 또는 신뢰성의 문제에 상당한 위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일정한 기간 동안은 우리가 웬만한 안전장치가 확보될 때까지는 직접 방문을 통한 재외선거인등록이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외선거 투표방법에 있어서도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우편투표, 인터넷투표 또는 프랑스 등 일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리투표까지도 대안이 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 또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현행과 같이 재외국민선거 투표방식은 공관투표 방식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대체시설에 투표소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대체시설에 투표소 설치가 가능한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의 경우에 형평성 문제가 또한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2012년의 경우에는 공관투표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선거과정의 급변사태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선거가 진행되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예단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선거가 일부 지역에서 중단되어야 된다고거나 또는 재외선거 전체가 중단되어야 될 상황에 처하게 될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누가 신속하게 판단해서 결정을 하느냐의 부분도 선거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정치적 후폭풍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데 필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러한 판단을 종합적으로 또 신속하게 내려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정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재외국민선거 대상 선거와 선거권 부여 기간의 설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재외국민선거의 대상으로 어떤 선거를 할 것이냐는 국가마다 다른 선택입니다. 대선과 총선을 함께 적용하는 국가가 가장 많지만 지방선거까지 적용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현재 대통령선거 그다음에 국회의원선거, 총선의 비례대표, 그다음에 지역구 후보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재외국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에까지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곳에 현재 거주하지도 않고 상당한 기간 동안 있을 예정이 아닌 경우에도 불구하고 또 지역 사정에 대해서 지역에 사는 사람만큼 그렇게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선거구의 경우에는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 방향이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해외선거구의 설치에 당분간 그렇게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재외국민선거권을 장기적으로는 재외국민 각

각의 체류기간에 따라서 일정한 제한점을 두고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재외국민선거를 위한 정당 활동 보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현재의 정당법의 경우에는 해외지부의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고 법적 차원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기구의 설치나 운영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해외의 경우에도 정당의 해외지부 창설을 허용하거나 또는 재외국민들의 자유로운 선거활동을 보장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구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국내 선거법의 경우에는 선거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각종 모임과 선거운동을 위한 단체의 설립을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런 규정들이 국내에만 적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해외에까지 적용되어야 되는 것인지, 적용한다면 어느 부분까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2012년 재외국민선거의 경우에는 우리가 대의민주주의 국가의 상징으로서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이 선거이고 따라서 재외국민선거의 실시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세계적 수준으로 제고하는 데 결정적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전 세계 170여개국 230여만 명으로 추산되는 재외국민 중 100만 명 정도가 투표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이들의 영향력이 막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재외국민선거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해야 될 원칙은 공정성과 신뢰성의 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와 투표 과정의 논란이 선거결과에 대한 불복과 이에 따른 정치적 혼란 그리고 국정 마비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을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재외국민선거 과정에서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최우선과제로 설정하고 재외국민선거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재 박명호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양대학교의 방승주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방승주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방송주입니다.

저는 재외선거제도의 헌법적인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위주로 진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선거권의 행사를 위해서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규정들과 그리고 국민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국민투표법 규정에 대해서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 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고 국회에게 2008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국회도 이에 부응을 해서 2009년 2월 5일 날 이와 같이 공직선거법이나 국민투표법 그리고 주민투표법도 다 개정을 했고 그래서 2012년 4월 국회의원선거와 그리고 12월의 대통령선거 때부터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역사상 재외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현행 재외선거제도는 상당히 불완전하고 불충분하게 제도화되어서 사실상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2009년도에 이미 일본 재외국민이 한 번 그리고 2010년도에 미국 재외국민이 한 번 해서 현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사건이 2건이 벌써 제기되어서 계류 중인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저런 문제들이 제기가 되다 보니까 국회에서도 이와 같이 재외선거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그 사이에 중앙선관위나 여러 국회의원들께서 좋은 개정의견들을 또 개정안을 제출해 주신 상태입니다.

제일 먼저 쟁점이 되는 것은 재외선거의 인정범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행 공직선거법은 재외국민들에게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의한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권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방금 앞서 진술인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권은 원칙적으로 재외국민들에게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저는 이와 같은 것은 헌법상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서 국내에 있는 국민들의 경우는 1인 2표를 부여 받고 있는 데 반해서 재외국민들에게는 1인 1표만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평등선거의 원칙은 계산가치의 평등과 의석배분에 있어서의 결과가치의 평등 이 두 가지를 함께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 재외에 있는 국민들의 경우는 그저 비례대표제 국회의원 1표만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국내에 있는 국민들은 2표를 행사할 수 있어서 국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 영향력의 측면에서 벌써 차별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합리성의 문제라고 하기보다도 헌법이 특별히 선거와 관련해서 재외국민들에게도 평등하게 선거권을 모두 인정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였다라고 할 것 같으면 국회는 이 헌법에 구속이 되어서 그러한 재외국민들에게도 모두 지역구 국회의원선거권까지 인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에서도 이미 2005년 9월 14일 날 재외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이미 도입되어 왔었던 재외선거제도에서 비례대표제 국회의원선거만 인정을 한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최고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렸었고 또 그와 같이 인정 안 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까지 했었다는데 그러한 손해배상청구도, 말하자면 국가배상청구도 인정을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선거인명부의 등록신청과 작성의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지금 떠오릅니다. 선거인명부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자기의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게 될 경우에는 선거를 할 수가 없게 되니까 이 선거인명부 작성의 문제는 마치 선거권의 성립 여부를 좌우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 강경태 교수님이나 박명호 교수님께서 다 잘 지적해 주셨듯이 지금 현행 선거법은 재외국민들이 반드시 공관에 출석을 해서 등록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령 중국의 우루무치 같은 데서 살고 있는 재외국민들의 경우는 베이징까지 가려면 비행기로 3시간,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애리조나에서 LA 총영사관까지 가려면 역시 비슷한 시간, 그래서 각각 신청을 하기 위해서 한 번 공관을 방문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 또 한 번 방문을 해야 되고, 1박 2일씩. 그것은 사실상 선거를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나 똑같기 때문에 이것은 형식적

으로는 선거권을 인정했지만 사실상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나 똑같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선거인명부의 등록신청을 하는 그 절차 자체도 매우 간편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첫 선거이다 보니까 명부 작성이 제대로 잘 안 되어 있으니까 처음에는 좀 까다롭게 할 필요성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이후만이라도 이 명부제를 영구명부화시켜 가지고, 국내에 있는 선거권자들도 역시 직권주의에 따라서 구시군의 장이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재외국민들의 경우도 선거가 거듭되게 되면 영구명부화시켜서 그리고 그것도 신고주의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직권주의에 따라서 하게 하면 이와 같이 선거인명부 신고절차에 따른 그 차별도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투표 방법과 관련한 문제인데요. 현행 선거법이 지금 공관투표만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공관투표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매우 상당한 비용을 소요하게 하는 문제가 있고 또 멀리 떨어져서 살거나 아니면 가령 알바니아에 살고 있는 재외국민들과 같은 경우는 공관도 없어서 그리스에 있는 공관까지 찾아가 가지고 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전체 재외국민들에게 선거가 다 가능하게 하려고 한다면 우편투표가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고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헌법상 거의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바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나 하면 지난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실제로 보통선거의 원칙상 모든 재외국민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인 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공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아무리 이와 같이 재외선거제도가 도입된들 투표 참여율도 낮게 될 것이고 매우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순회투표제도라든가 또 그 외에 추가투표소제도를 검토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문제들은 사실은 우리 주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서 그와 같이 순회투표를 한다면가 아니면 순회등록신청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다닌다든가 하는 것은

우리의 주권의 행사입니다. 사실은 그것은 국제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영사에 속한 문제가 아닙니다. 영사 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면책특권에 해당하는 그러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주재국의 허가를 거쳐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우편투표밖에 없다, 그래서 우편투표를 이번에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 밖의 선거운동이라든가 또 공정성 확보의 방안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재 방송주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훈교 재외선거기획관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정훈교 중앙선관위 재외선거기획관 정훈교입니다.

오전 회의에서 저희 중앙선관위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무적으로 그동안 선거 준비를 하면서 저희가 재외선거인의 참여를 조금이나마 쉽게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법적 외의 절차적 공정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 마지막으로 국외선거사범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몇 가지만 발췌해서 진술을 하겠습니다.

먼저 재외선거인의 참여를 편하게 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현행 제도는 아시다시피 재외선거가 국내선거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에서 실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참여 편의보다는 공정성 쪽에 다소 비중을 두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여러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공관을 직접 방문해서 등록신청을 해라, 우편투표를 허용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공관에 나와서 투표해라, 이 두 가지 점에서 이것이 지나친 제한이다, 이런 의견들이 각계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공히 후보자 등록이 끝나고 국내와 같은 기표식 투표용지를 만들어서 외국에 보내면 늦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국제특급우편 즉 EMS 방식을 택하고 있지요. EMS 방식을 택해서 저희가 모의선거를 통해서 해 보니까 사실 모의선거 전부터 입법 당시부터 문제가 됐던 거지만 이 엄청난 EMS 비용, 한 통에 1만 4000원 정도 됩니다. 이 국제우편 비용이 100억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모의선거를 해 보니까 국가별로 약간의 배송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그다음에 자서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개표 장소에서의 유·무효 문제, 특히 우리 재외국민들께서 의외로 한글을 해독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개표 장소에서의 유·무효 문제, 이러한 세 가지 큰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해야겠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것이, 생각을 한 것이 투표용지를 재외투표소에서 직접 기표식으로 발급해 가지고 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법은 아직 개정이 안 됐지만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지금 시험을 해 보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절차적 공정성에 관한 부분은 사실 불법적 복수국적자를 어떻게 가려낼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오전에도 얘기했었지만 사실 거류국의 시민권을 취득하고도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 참여를 배제하기 위해서 현행법이 일정 부분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부 파악을 해 보니까 그런 서류들, 여권 외의 비자나 영주권, 증명서나 이런 부분들을 원본을 제출해서 현장에서 확인을 하면 거의 대부분 불법적 복수국적자를 100% 완전하지는 않지만 가려낼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 그렇지만 현행법이 사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원본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고 또 거기에 따른 국가의 의무도 부여하고, 그런 의견을 제출을 했습니다.

국내거소신고자는 오전에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국외선거사범에 대해서 영사조사 기타 여러 가지 방안이 오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국외선거사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부분은 사실 중앙선관위에 두고 있는 재외선거관계기관협의회가 있습니다. 9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 국외선거사범에 대한 대응방

안은 그동안 2년 동안 법무부가 중심이 되어서 검토를 한 사안을 저희 관계기관협의회 차원에서 논의를 하고 저희 이 개정의견에 담았던 그런 내용입니다.

1분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예.

○진술인 정훈교 그래서 저희가 그중에서 그래도 현실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여권발급 제한 또 외국인의 입국 제한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재 정훈교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진술인의 의견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는 위원 일인당 7분 범위 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진술인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주당의 노영민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민 위원 정훈교 기획관님, 이번 재외국민 선거 참여의 문제에 있어서 저는 결국 우리가 대원칙을 세워야 될 것이 있거든요. 뭐냐 하면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부분과 참정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한다는 이것이 현실적으로는 충돌한다,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충돌하는데 과연 우리가 어느 쪽을 더 비중 있게 들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경재 위원장, 김정훈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 재외국민이 한 230만, 그래서 100만 정도가 투표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97년 대선에서 37만 표 차, 2002년 대선에서 57만 표 차……

○진술인 정훈교 그렇습니다.

○노영민 위원 이것은 당락을 가를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재외국민의 그 투표수가.

그런데 공정성과 신뢰성에 만약에 만의 하나라도 문제가 발생한다면 잘못하면 정말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사태가 진전될 수도 있다……

○진술인 정훈교 그렇습니다.

○노영민 위원 따라서 저는 적어도 이번 첫 실시될 때에 있어서 공정성과 신뢰성에 있어서 절대로 정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선관위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지요?

○진술인 정훈교 그렇습니다.

○노영민 위원 그리고 이중국적자들에 대한…… 이게 그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 공정성과 신뢰성의 문제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중국적자에 대한 문제거든요. 우리는 이중국적자를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진술인 정훈교 그렇습니다.

○노영민 위원 이중국적을 인정하는 나라도 있고, 서로가 법률 체계가 다르지요.

그런데 영주권을 가진 자가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에 시민권 취득 사실을 숨기고 영주권자로서 행세를 했을 때 이를 현실적으로 식별해 낼 방법이 마땅치 않지 않습니까? 본인이 의도적으로 숨기고 투표권을 행사하려고 했을 경우에는 밝혀낼 방법이 없겠다, 왜냐하면 영주권자로서의 모든 서류는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진술인 정훈교 예.

○노영민 위원 결국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난감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해서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것이고 결국은 우리의 공권력이 어떻게 개입할 수 없는 그런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국민에 대해서 이런 부정, 소위 투표권이 없는 자의 투표 그리고 투표 과정에서의 불법성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과연……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아무튼 이런 것에 대해서 대원칙, 일정 부분 참정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지 못 한다면 측면이 있다라도 공정성과 신뢰성에 우선 방점을 두고 선거 사무를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진술인 정훈교 위원님께서 두 가지 걱정거리…… 이중국적자는 지금 불법적 복수국적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불법적 복수국적자의 참여 문제 또 선거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어떻게 단속할 것인가? 저희도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요.

다만 불법적 복수국적자 문제는 아까 제가 설명을 다 못 드렸습시다만 국가마다 또 주마다 그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할 때 반납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100% 완전하지는 못 하지만 90% 이상 식별이 가능하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미국의 어떤 주에서 그 나라의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는 영주권을 반드시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록 신청할 때 ‘그 영주권 원본을 제출하라, 그 영주권을 제출 못 하면 당신은 그 나라의 시민권자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다시피 이 이중국적자를 100% 가려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가가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민권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경제문제였기 때문에 그것을 등한시했다더라도 이제는 1인 1표에 의한 선거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철저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남은 기간 더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행위에 의한 선거운동, 부정 마찬가지로입니다. 그 부분도 제도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하고요. 또……

○노영민 위원 그리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진술인 정훈교 예.

○노영민 위원 오지 교민의 소위 투표소에 대한 접근권 문제인데 사실 이 부분은 국내도 마찬가지로거든요.

○진술인 정훈교 그렇습니다.

○노영민 위원 아시지만 투표소가 없는 도서가 있어요. 날씨가 좋다가 그날 갑자기 비 오고 파도 치면 그 섬 주민 전체가 다 기권입니다. 그러면 당락이 막 이상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지요. 국내도 그래요. 국내도 보장이 되지 않는데 외국에 차별적으로 특혜를 준다는 것은 국내하고 맞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등록과 투표, 모든 인터넷, 우편 이런 것을 투표의 어떤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했을 경우에 과연 본인확인 절차는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이게 가능한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대리투표가 횡행할 수 있고?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겠다, 현실적으로.

○진술인 정훈교 위원님 선관위가 입법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제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견을 가지

고 있지 않습니다.

○**노영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훈** 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여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상규 위원**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훈** 조금 이따가?

그러면 민주당의 박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숙 위원** 박명호 교수님께서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권한도 부여하는 것이 전체적인 평등 투표의 원칙에 맞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진술인 방승주** 그것은 제가……

○**진술인 박명호** 방승주 선생님께서 하신 건데요.

○**박선숙 위원** 박명호 교수님은 아니셨네요. 죄송합니다.

박 교수님께 먼저 여쭙 볼게요.

○**진술인 박명호** 예.

○**박선숙 위원** 박 교수님께서 재외국민 선거권을 체류기간에 따라 다른 나라들처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점에 관해서는 저희가 만약에 이번에 선거를, 내년도 선거를 시행하고 난 이후에는 다시는 이런 유의 조건과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이라서 만약에 논의를 한다면 지금 시점이 마지막 기회일 것 같은데요.

타국의 사례가 각 나라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영국은 출국한 지 15년, 호주는 해외 체류 6년, 캐나다는 5년, 뉴질랜드는 3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적합한 시점을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진술인 박명호** 글썄요. 이게 특별한 기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몇 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기준은 사실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다 다른 정도일 텐데요. 제가 보기에는 영국형의 한 15년 정도 기준이 적합하지 않느냐라는 건데 근거가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도 사실 특별한 근거는 없습니다.

○**박선숙 위원** 방 교수님께……

○**진술인 방승주** 예.

○**박선숙 위원** 지역구 선거에도 투표권을 줘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제도의 안정성

이라는 측면하고 그다음에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재외국민과 지역에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 간의 형평성 문제 또 방금 옆의 박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외에 체류기간이 지나치게 장기화되어 있어서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하여 모두 지역구 국회의원까지를 포함해서 투표권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한번 말씀을 좀 주시지요.

○**진술인 방승주** 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재외국민들 가운데서 국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거든요. 조금 더 세분화시킨다면 소위 국내 거주신고를 한 재외국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이런 분들은 현행법상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재외국민들의 경우는 할 수가 없는데 그런 경우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신데 형평성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소가 돼야지 하향평준화를 하면 곤란하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해외에 오래 사시다 보면 지역 사정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또 무관심할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이 어떻게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선거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글로벌시대에 그리고 정보화시대에 해외에 계시다라고 해 가지고서 지역 사정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더 관심이 많고 더 잘 알 수도 있습니다. 관심이 없어서 선거권을 행사 안 하는 것은 그 선거권자 자유입니다. ‘당신은 무관심할 테니까 선거권을 행사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민은 없습니다. 헌법상 이것은 요청되는 선거권이기 때문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권도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할 것 같으면 행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 계십니다. 지역대표이기만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대표로서의 그 기능이 더 중요하고, 그렇다면 그러한 국민 대표를 선출하는 일에 재외국민이라고 해서 빠져서는 안 되겠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 체류기간의 문제거든요. 여러 나라들이 그와 같이 체류기간에 따라서 선거권 행사를 제한하는 케이스들이 좀 있습니다. 그

런데 한 사례를 든다면 독일과 같은 경우 종래에 25년으로 제한을 했다가 2008년도에 법을 개정하면서 완전히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과 같은 경우에는 아예 국내에서도 우편선거제도의 어떤 장애를 완전히 제거를 하고 원하기만 하면 우편선거를 할 수 있는 정도로 법을 개정해 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보통선거 원칙의 취지를 완전히 더 많이 실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이미 현행 공직선거법이 모든 재외국민들에게 체류기간과 상관없이 선거권을 이미 한번 부여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도 이미 늦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급적으로 그걸 박탈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감사합니다.

○박선숙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저는 지역구 선거의 투표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의 논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제도 자체의 초기 도입 과정에서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관한 문제가 하나 있을 수 있고, 원론적으로 저는 조금 교수님 말씀과는 생각을 달리하는데 비례대표와 지역대표의 대표성의 차이가, 우리가 정치학에서도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어떤 강조점을 둘 것인가에 대한 대표성의 차이가 근본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모두 다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형평성에 관한 문제라거나 평등선거에 관한 문제만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다시 질의를 드리고요.

○진술인 방승주 예.

○박선숙 위원 선관위에 여쭙 볼게요.

저희가 우편선거제도를, 우편등록이나 우편선거제도를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는 너무 거리상으로 멀어서 문제가 되는데 순회영사제도에 관해서 외교부하고 협조가 적극적으로 된다면 또 외교부와 당사국과 협조가 적극적으로 된다면 등록과 투표절차에 대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앞에 예를 들었던 알바니아나 여러 나라들에 대하여 그런 순회영사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등록 과정까지 포함해서요.

○진술인 정훈교 등록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등록은 적극적으로, 외교부의 의견은 현재 공관을 방문해서 등록신청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순회영사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해석을. 그래서

법에 담아 달라 이런 입장입니다.

순회투표는 추가 투표소와 순회투표의 선택의 문제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투표관리의 안전성을 생각한다면 순회하면서 투표를 하는 것보다는 특정 장소에 투표소를 만들어서 투표를 시키는 것이 훨씬 투표소 보안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선숙 위원 개념의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선거관리 입장에서 투표소, 추가 투표소를 설치하는 문제하고 순회영사제도는 당사국하고의 외교적 관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관한 접근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국하고의 관계 문제를 좀더 적극적으로 풀어서 접근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순회영사제도를 통해서 기표소를 추가로 다양한 곳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2단계의 작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시간을 조금 쓸 수 있으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위원장대리 김정훈 예.

○박선숙 위원 지금 앞에서 말씀 주셨는데요.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불법선거에 대해서 법무부 쪽에서 특칙을 마련해 가지고 지금 조사하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술인 정훈교 예.

○박선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선거법에다가 담으면 그것이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진술인 정훈교 있다고 봅니다.

저희는 영사 조사인데 영사 조사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형사소송절차가 분명히 공판주의를 중심으로 하고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선거법이 깨고 들어갈 것인가 일반 형사절차에 의해서 할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의견을 같이 합니다만 우리 사법절차, 형사절차의 안정성을 위해서 이 부분을 선거법에서 개정을 하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일반 형사법을 먼저 개정을 하고 선거법도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방식 이런 방식이 안정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훈 박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그러면 간단하게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강경태 신라대학 교수님이시지요? 반갑습

니다.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발표 잘 들었고, 우리 재외교민들에게 투표권을 주어서 재외국민들 선거를 할 때에 제일 문제가 저는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를 하느냐 하는 문제하고 또 그 선거로 인한 우리 교민사회의 갈등, 이게 막 골이 패어 가지고 오히려 선거로 인해서 교민사회가 사분오열 돼 가지고 영 안 좋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막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두 가지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데 보면, 부정선거 해결방안에 보면 선거운동에 있어서 한국 내 외교통상부에 등록된 단체 등 명확하게 인정된 단체만 선거운동을 하도록 규제하여야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선거운동은 우리 국내법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진술인 강경태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훈 그러니까 어떤 특정 단체만 한다든지 못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재외에서 한다 해 가지고 이런 단체만 하고 또 저런 단체는 안 된다 하기가, 그게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은지 그걸 좀 여쭙 보고 싶습니다.

○진술인 강경태 글썄, 그거를 일률적으로 사실 어떤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나 단체는 할 수 없다고 완전히 딱 잘라서 이렇게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해외에 살고 있는 분들을 만나 보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식의 정치 편재 현상, 모든 분야에 정치가 개입되는 거는 해외에서만은 좀 막아 줘야 되겠다 이게 지금,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사람 모이는 거 자체가 일종의 범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하시는 분들은 우리 기업활동에 지장을 받아서 추방이 된다는 거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운동도 국내에서 하는 것처럼 무한정 이렇게 허락하여 주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거운동을 하는 단체, 하고 싶다면 국내의 선거관리위원회 같은 데에 등록을 하게 하고 등록을 하게 한 단체나 개인만 어떤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또 정치인이나 정

당에서 방문을 할 때는 따로 따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어떤 특정한 날짜·장소를 지정해서 공동으로 하는 게 훨씬 여러 가지 문제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정훈 간사, 이경재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훈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조항에 보면, 선거기간 내 후보자 방문 목적·횟수·장소 등을 명확하게 설정해서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러는데, 이거는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선관위에서 나오셨지요?

○진술인 정훈교 예.

○김정훈 위원 그런데 오늘 오전에 재외국민 관련 선거법 내용을 보니까 선거기간 내에 후보자에 대한 규제조항은 없어요, 없지요?

○진술인 정훈교 없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러니까 후보자가 아무 때나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 모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도 후보자별로 어떤 지역에는 횟수를 정한다든지 어떤 규제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안을 조금 준비를 한번 해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진술인 정훈교 예.

○김정훈 위원 그리고 교수님께서 하신 게, 현지에서 정치인 방문으로 인해서 줄 서기, 인맥 만들기 등 부정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또 우리 한인사회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랬는데, 이런 걸 좀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가 어떤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진술인 강경태 글썄요, 이미 한국에서 어떤 정권이 들어서는가에 따라서 해외에서 보면 한인 선거 회장에 당선되는 분들의 지역성까지도 달라지는 경우가 사실 이때까지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줄 서거나 부정적인 거를 어떻게 타파하느냐 이거는 상당히 원론적이고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인데, 우리 정치가 성숙하면서 이것도 하나 하나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의 등록화를 통해서, 아까 정훈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를 비리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여권발급의 제한 이런 어떤 징벌적인 그런 조치를 함으로써 그런 제도가 어느 정도는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훈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김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상규 위원** 아는 게 아직 별로 없어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상식선에서 한두 가지만 여쭙보겠습니다.

우리 정훈교 기획관님, 재외국민선거 투표율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까?

○**진술인 정훈교** 우리 국내에서 투표율 예측을 하면 대부분 5% 범위 내에서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만 이 115개 국가의 투표율이라는 것이 0.2%부터 60%까지 다양합니다.

○**여상규 위원**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거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사실 투표율이 너무 낮아서 유명무실화되면 또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많은 비용까지 들어가면서 하는 데에 대한 효과가 좀 미흡하지 않겠나 싶어서요, 그런 투표율을 좀 제고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가 되어야 될 거 같은데……

우리 선거운동 관련, 선거운동 기간과 운동 방법에 관해서 언급을 하신 분은 우리 방송주 교수님께서 언급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도 보면 선거운동 기간이 재외국민투표는 좀 일찍 시작되기 때문에……

○**진술인 방송주** 그렇습니다.

○**여상규 위원** 운동 기간이 아주 짧게 되고 그리고 또 운동 방법도 대통령선거하고 국회의원선거는 좀 다르기는 하겠습니까마는 대개 인터넷이나 UCC, 트위터 이런 걸로 거의 제한이 되다 보니까, 특히 국회의원 총선에서는 재외국민들의, 투표를 하려고 하는 재외국민들의 어떤 정보 획득 수단이 상당히 제한되지 않겠나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진술인 방송주** 예.

○**여상규 위원** 그렇다면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투표율 역시 더 낮아질 것처럼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 제가 죽 읽어 봤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리 선관위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 방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도 연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연구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진술인 정훈교** 지금 사실 저희 많지 않은 예산 가지고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막상 해 보니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홍보를 한다는 것이 참 굉장히 힘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도 가장 돈 안 들이고 저희가 현지에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현지 한인 신문들이더라고요. 지금 한 2년 반 동안 400개사, 금년도 800개 정도—현지 언론입니다—거기에 자료를 매주 보내 주고 있고 그분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실어서, 지금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알려진 게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여상규 위원** 선거운동 방법으로 국내와 어떤, 당연히 일치를 시키기는 시켜야 될 텐데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예컨대 대중연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그런 걸 보충할 수 있는 다른 방법, 예컨대 좀 자세한 홍보물을, 홍보 책자나 이런 것들을 재외국민들에게 집집마다 송부를 한다든지 이런 보완방법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국내에서는 허용 안 되지만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좀 허용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깊이 생각을 안 해 봐서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선관위 차원에서 좀 연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정훈교** 알겠습니다.

○**여상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여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숙 위원께서 보충질의 해 주시겠습니다.

○**박선숙 위원** 선관위에 여쭙보겠습니다.

시민권을 갖고 있어서, 실제로 선거권이 없으면서도 등록하는 경우를, 부정등록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꼭 공관에 방문해서 등록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그것이 만약에 사유라고 한다면 등록 시나 투표 시나 두 번 중에 한 번만 방문해서도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진술인 정훈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표 장소에서 그 사람이 투표권이 있다 없음을 판별하는 방법은……

○**박선숙 위원** 소란이 날까 봐요?

○**진술인 정훈교**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멀리까지 와서 투표를 안 시켰을 경우에 문제도 크고요.

○박선숙 위원 제가 그러면 다시 바꿔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신청을 했을 경우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어떤 분이 신청을 했는데 그분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본인이 공관에 왔을 때만 확인이 됩니까? 아니면 인터넷상으로라도 자신의 신상정보에 관한 것을 공관에, 그러니까 등록 신청을 한 것을 가지고 공관에서 서류를 가지고 대조해 봐서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진술인 정훈교 지난번 모의선거 때 저희가 그런 제도를 한번 검토해 보기 위해서 우편으로 등록 신청을 받아봤습니다. 받았는데, 반 이상이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등록을 못 시켰습니다.

○박선숙 위원 그러면 서류의 미비 때문에 그런가요?

○진술인 정훈교 서류의 미비도 있고요, 그 서류 가지고 그분이……

○박선숙 위원 시민권 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이유가?

○진술인 정훈교 그렇습니다. 본인이 여러 가지를 소명을 또 와서, 불확실하기 때문에……

○박선숙 위원 추가가요?

○진술인 정훈교 예,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박선숙 위원 그러면 이를 테면 본인의 연락처를 남긴 이메일이나 우편 서류로 등록을 신청을 해서 그 연락처로 추가로 필요한 사실관계를 조회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술인 정훈교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하면 불가능한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선숙 위원 그런 면에서 앞에 말씀 주신 것처럼 많은 비용을 들여서 투표소까지 왔는데,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다는 그런 정황은 이해가 되지만 그 앞의 과정에서 서면이나 인터넷 등이나 우편이나 이렇게 서류 등록을 받아 가지고 사실관계 여부를 우리가 투표를 관리하는 쪽에서 조금 더 노동을 들여서, 노력을 들여 가지고 확인을 해서 굳이 헛걸음하지 않도록 사전에 통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해야 실제로 이게 투표로 가기까지가 산 넘고 물 건너 너무 어렵다, 이게 정말 투표권을 준 것이냐 이런 류의 섭섭함, 어려움 이런 것

들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술인 정훈교 알겠습니다.

○박선숙 위원 다른 한 가지는요, 현지 투표소에 설치된 프린터로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방법에 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타국의 사례에 관해서 예를 들으셨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우편투표를 허용하다가 우편투표를 또 폐지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진술인 정훈교 그렇습니다.

○박선숙 위원 그래서 타국에서 하고 있다는 자체가 우리가 이번에 도입하는 것의 100% 충분한 근거는 되기 어렵습니다.

○진술인 정훈교 그렇습니다.

○박선숙 위원 그래서 현지에서 기표용지를 프린트하는 방법이 가진, 저는 상당히 신뢰에 위험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시험용지를 별도로 인쇄할 수 있는 장소를 이렇게 허용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되는 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있을 수 있는 사고의 가능성들을 충분히 검토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진술인 정훈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개정안도 EMS 방식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프린트해 현장에서 발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도 개정의견을 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그것을 생각한 것은 아까 커다란 세 가지 문제, EMS가 가지는 큰 세 가지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겠는데…… 거기에 대한 게 저희 고민입니다.

○박선숙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1분만 더 주시면…… 죄송합니다.

오늘 어렵게 참석해 주신 방 교수님과 박명호 교수님께서 조금 다른 의견을 서로 주셨는데요 저는 재외국민들의 투표권 문제에 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현재의 판결 과정도 있고 국회의 논의 과정도 있고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떤 것이 절대적으로 옳은 방법이 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오히려 투표율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같은 경우에 현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현지에서 어떻게 영주권자로서 그 지역 내에서 발언권을 높여갈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저희가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온 부분이라서

너무 국내의 정치에만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거기에 몰두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많은 우려들을 갖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런 면들도 저희 논의의 과정에 녹아 있다는 점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독일이 25년이라는 거주기간을 제한하다가 완전히 폐지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처럼 저희도 이 제도를 신뢰감 있고 공정하게 도입하기 위해서 정말 숙의의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제가 좋은 말씀 듣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박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진지하게 진술과 답변을 해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진술인 여러분께서 다양하게 제시해 주신 의견들은 앞으로 국회가 재외국민선거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청회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위원장 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외국민선거제도에 관한 공청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소위원회 위원 명단 구성이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소위원장께서 소위원회별로 의사 일정을 잡아서 소위에 회부된 바 있는 법률안을 가급적 우리 위원회의 활동 시한까지 심사 완료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출석 위원(14인)

권영길	김정훈	김혜성	노영민
류근찬	박기춘	박선숙	박준선
백원우	성윤환	안효대	여상규

이경재 진행

○출장 위원(1인)

이은재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연호
전문위원	손충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 참석자

사무총장	이종우
선거실장	김용희
법제기획관	추형관

○출석 진술인

강경태(신라대학교 교수)
 박명호(동국대학교 교수)
 방승주(한양대학교 교)
 정훈교(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기획관)

【보고사항】

○위원 사임 및 보임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전병헌	박선숙	민주당	2011. 4. 8

○의안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일 의원 대표발의)

(2011. 3. 31 윤상일·노철래·김혜성·송영선·김을동·송민순·정영희·김정·양승조·조정식·조배숙 의원 발의)

4월 1일 회부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충환 의원 대표발의)

(2011. 4. 1 김충환·김용구·강석호·김정권·김창수·김옥이·이한성·홍영표·이화수·이경재·박대해·장윤석·박민식·정의화·이종구·송광호·고승덕·임영호·서상기·이진삼·김선동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2011. 4. 1 이종걸·조영택·장세환·양승조·오제세·김재균·조경태·최종원·박주선·장병완·안민석 의원 발의)

이상 2건 4월 4일 회부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구상찬 의원 대표발의)

(2011. 4. 8 구상찬·유일호·김호연·차명진·김영선·홍정욱·윤상현·권영진·이혜훈·남경필·김영우·손숙미·박영아 의원 발의)

4월 9일 회부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영호 의원 대표

발의)

(2011. 4. 11 임영호·류근찬·김태원·김용구·
정영희·홍준표·김창수·이명수·김낙성·
안규백·오제세 의원 발의)

4월 12일 회부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
발의)

(2011. 4. 20 최영희·강기정·강창일·김상희·
김성순·김재윤·박은수·백원우·변재일·
양승조·원혜영·이미경·이춘석·전현희·
주승용·추미애 의원 발의)

4월 21일 회부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
발의)

(2011. 4. 22 권영세·손범규·김세연·황영철·
한기호·조진래·이학재·이종구·김정권·
구상찬·최연희·김혜성·이한성·여상규·
허천·권성동·신성범·권경석·이정현·
황우여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
발의)

(2011. 4. 22 오제세·전병헌·변웅전·백재현·
김우남·강기정·김효석·박영선·조영택·
강창일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영 의원 대표
발의)

(2011. 4. 22 박선영·권선택·김낙성·김옥이·
김용구·김재윤·김혜성·박순자·변웅전·
신낙균·윤상일·이명수·이재선·이진삼 의원
발의)

이상 3건 4월 25일 회부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희 의원 대표
발의)

(2011. 4. 26 이정희·정동영·김진애·장세환·
양승조·문학진·김영진·서종표·신건·
김부겸·이종걸·홍영표·이미경·박영선·
천정배·조영택·박주선·김재균·최규식·
강기갑·곽정숙·권영길·홍희덕·유원일·
조승수·유성엽 의원 발의)

4월 27일 회부됨

○의견서 회부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

(2011. 4. 8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제출)

4월 8일 회부됨